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139-10

www.mohw.go.kr

2025년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제1편 사업개요

Ⅰ. 사업 개요 ····· 2
1.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 2
2. 주요 경과 ····· 2
3. 최근 법령 개정 사항 ····· 3

제2편 공중위생영업소

Ⅰ. 공중위생영업 정의 ····· 12

Ⅱ.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시설·설비 기준 ····· 18
1. 신고 ····· 18
2. 변경신고 ····· 23
3. 폐업신고 ····· 24
4. 지위승계 신고 ····· 25
5. 공중위생영업 시설·설비 기준 주요 참고사항 ····· 27

Ⅲ.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 33
1. 지도·점검 ····· 33
2. 행정처분 ····· 38
3. 과징금 처분 ····· 41
4. 과태료 처분 ····· 43
5. 벌칙 ····· 47
6. 봉인 ····· 48

Ⅳ.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50
1. 개요 ····· 50
2. 위촉 및 해촉 ····· 51
3. 운영 및 관리 ····· 52
4. 행정사항 ····· 54

Ⅴ. 위생교육 ····· 55
1. 운영 개요 ····· 55
2. 위생교육 실시 기관 행정지원 ····· 58

Ⅵ. 공중위생영업소 실태 보고 ····· 59

Ⅶ.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 61

제3편
이·미용업 및 면허

Ⅰ. 이·미용업 ····· 64
1. 이·미용사의 업무범위(시행규칙 제14조) ····· 64
2. 업무보조의 범위 ····· 66
3. 영업소 외에서의 이·미용 업무 ····· 66
4. 이·미용서비스 최종 지불가격 사전제공 ····· 67
5.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제2024-86호('24. 5. 22. 개정) ····· 69

Ⅱ. 면허 신청 및 교부 ····· 71
1. 개요 ····· 71
2. 검토 사항 ····· 72
3. 면허 반납 ····· 73

Ⅲ. 면허 재교부 ····· 75
1. 면허 재교부 신청 개요 ····· 75
2. 면허 발급기관에 따른 처리절차 ····· 76

제4편
부 록
(서식·참고자료)

Ⅰ. 관련서식 ····· 80
[서식 제1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81
[서식 제2호] 공중위생영업소 점검표 ····· 82
[서식 제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 83
[서식 제4호]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 84
[서식 제5호] 고발장 ····· 85
[서식 제6호] 진술서 ····· 86
[서식 제7호] 확인서 ····· 87
[서식 제8호] 게시문 ····· 88
[서식 제9호] 봉인물품 보관증 ····· 89
[서식 제10호] 봉인용지 수불대장 ····· 90
[서식 제11호] 봉인 물품대장 ····· 91
[서식 제12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신청서 ····· 92
[서식 제13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 93
[서식 제14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 94
[서식 제15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장 ····· 95
[서식 제16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 96
[서식 제17호]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 ····· 99
[서식 제18호] 불법카메라 미설치 점검 확인증 ····· 100

Ⅱ. 참고자료 ····· 101
[참고1-1] 이·미용사 면허 초기자료 개별등록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 102
[참고1-2] 이·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 104
[참고2-1]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 112
[참고2-2] 공중위생영업소 실태보고 조사지침 등 ····· 113
[참고3]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 ····· 118
[참고4] 전국 공중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 121
[참고5] 위생교육 실시지침 및 관련서식 ····· 151
[참고6] 위생교육 실시단체 현황 ····· 164
[참고7] 업종별 행정처분기준 ····· 165

2025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제1편

사업개요

Ⅰ. 사업 개요

1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 공중위생영업(6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2 주요 경과

-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으로 관리('62년)
-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계 법률을 흡수·통합하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86년)
- 「공중위생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99년)
- 목욕장업에 찜질 서비스를 편입('05. 10. 1.)
- 미용사(피부) 업무범위 신설('07. 4. 5.) 및 미용업(피부) 업종 분리('08. 6. 30.)
- 숙박업에 객실 내 취사시설 등 편의시설을 편입하여 숙박업(생활)으로 분리('12. 1. 10.)
- 미용업(네일) 업종 분리('13. 9. 26. 개정, '14. 7. 1. 시행) 및 미용사(네일) 업무범위 신설('15. 1. 30.)
- 미용업(화장·분장) 업종 분리('14. 10. 15. 개정, '15. 7. 1. 시행) 및 미용사(메이크업) 업무범위 신설('15. 11. 3.)
-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여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15. 12. 22. 개정, '16. 12. 23. 시행)
- 舊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된 위생용품 관련 업무는 「위생용품 관리법」의 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17. 4. 18. 제정, '18. 4. 19. 시행)

3 최근 법령 개정 사항

1. 「공중위생관리법」

가. ’24. 10. 22. 개정, ’25. 4. 23. 시행

- 목욕업 영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 제시를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조제8항 신설)
- 영업자가 ❶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혹은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❷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제11조제2항 신설)

나. ’24. 2. 6. 개정, ’24. 8. 7. 시행

-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류의 매매·투약 등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1조제1항제8호,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개정)

다. ’23. 6. 13. 개정, ’23. 12. 14. 시행

-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추가(제11조제3항제3호 신설)

라. ’23. 3. 28. 개정, ’23. 9. 29. 시행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제3조제3항 신설)

마. ’21. 12. 21. 개정, ’22. 6. 22. 시행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시 청문 폐지(제12조제1호 삭제)
- 미신고 숙박업 처벌기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강화(제20조제1항)

바. ’20. 4. 7. 개정, ’20. 7. 8 시행

- 이용사와 미용사, 위생사 면허 대여 및 알선 금지 조항 신설(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의2 제9항 및 제10항)
- 이용사와 미용사, 위생사 면허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제20조제3항 제1호~제4호)

사. ’19. 12. 3. 개정, ’20. 6. 4 시행

-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면허 교부 신청일로 명확하게 규정(제6조의2제6항)
-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정비(제9조제6항 등)
- 선의의 공중위생영업 구제 조항 신설(제11조의3제3항)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미용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율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도록 세부 명칭 수정(제2조제1항제5호)
-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이·미용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이·미용사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제6조제1항제3호)

아. ’19. 1. 15. 개정, ’19. 4. 9. 시행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제11조의2제1항)

자. ’18. 12. 11. 개정, 시행

-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이·미용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해야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행위능력 회복 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개정(제6조제2항제5호)
-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마련(제6조의2 제1항제1호~제3호)
-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 부여(제9조제2항~제4항)*
-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 근거 신설(제11조제1항제8호 등)**

* ’19. 6. 12. 시행　　** ’19. 12. 12. 시행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가. ’24. 5. 28. 개정, 시행

- 별표2. 파호.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금액을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인하(‘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 일부 개정’ 중 1개 과제로서 ’24년~’26년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적용)

〈참고. ’**26년 시행 예정**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기준 개정안(’24.11.12.개정, ’26.1.1. 시행)〉

- 2026년 위생교육 미이수자부터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 적용(1차:20만원〉2차:40만원〉3차:60만원)
-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까지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음 차수로 가중한다.

나. ’23. 12. 12. 개정, 시행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제7조의3제2항 등)

다. ’20. 6. 2. 개정, ’20. 6. 4 시행

- 숙박업과 미용업의 세분 정의 규정에서 미용업을 삭제(제4조)
  * 미용업의 세부 분야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분납 근거를 신설하고 분납 방법, 분납 취소 사항을 규정(제7조의3제5항~7항)

라. ’20. 4. 28. 개정, 시행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용 시설로 변경(제2조제1항제4호)

마. ’20. 3. 24. 개정, 시행

- 적용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지방세의 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7조의4)

바. '19. 10. 8. 개정, 시행

- 「과태료 금액 지침」('19. 2. 1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과태료 금액 조정(제6조의2제6항)

  ※ 개정령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사. '19. 7. 2. 개정, 시행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 "욕수"를 "목욕물"로 개정([별표2])

아. '19. 4. 9. 개정, '19. 4. 16.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9. 1. 15.)에 따라,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제7조의2제2항)

자. '18. 9. 28. 개정, 시행

-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요건을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인 자에서 '1년 이상'인 자로 완화(제8조제1항)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가. '25. 4. 23.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04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❶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❷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 (제19조제2항)

나. '24. 7. 29. 개정, '24. 8. 7.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중 숙박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마약류 투약·매매·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교사와 방조를 포함)' 추가(별표 7)

다. ’23. 11. 24. 개정, ’23. 12. 14.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44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규정(별표 7)

라. ’23. 9. 27. 개정, ’23. 9. 29. 시행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미소지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 신설
  -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제3조의3제2항)
- 미용업 지위승계 신고 시 변경신고 간소화
  - 상속인 등이 미용업 지위승계 신고 시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제3조의5제3항, 별지 제6호서식)

마. ’22. 6. 22. 개정, 시행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신설
  - 직권말소 예정사실 사전통지 및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절차 도입(제3조의4)
- 위생교육 제도 개선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하도록 명시(제23조제1항)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추가[별표1]
- 목욕물(욕조수) 염소 잔류농도 현실화
  -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조정[별표2]
-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 개선
  - 정신질환자 삭제[별표4]
- 목욕장 동반남녀 입장 연령 정비
  - 4세(48개월) 이상으로 위생관리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별표7]

바. ’20. 8. 28. 개정, 시행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영업신고와 변경신고 절차 신설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제3조제1항제1호의2)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3조제2항제1호의2, 제3조의2제3항제1호의2) 제출. 단,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제3조제2항제1호의2)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3분의 1 미만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도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제3조의2제1항제3호)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별표1]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신고 조건으로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으로 규정[별표1]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토록 하며,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별표4]

사. ’20. 6. 4. 개정, 시행

- 미용업 세부업종을 법률로 명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제3조제2항제3호의3)
-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 상속인 증명을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3조의4제2항)
- 지위승계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제3조의4제3항)

아. ’19. 12. 31. 개정, 시행

- 국유재산에서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변경신고사항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변경(제3조제2항, 제3조의2제3항·제4항)
- 공중위생영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하고, 해당 공중위생영업소를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에서 제외(제20조, 제23조제4항)
-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시 제출서류 중 ‘사진 2장’을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 개선하고, 분실 후 재발급 시 면허증 반환의무를 삭제(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 미용업 업무범위 조문의 복잡한 날짜 규정 정비(제14조제2항)
- 공중위생영업장이 다른 영업장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을 분리, 구획 등으로 세분화하고, 건물위생관리업·목욕장업의 시설·설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별표1])
-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이성출입가능 연령, 야간 청소년 출입가능 시간 등 위생관리기준을 개선([별표2], [별표4])

자. ’19. 9. 27. 개정, 시행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 “교육필증”을 “교육수료증”으로 개정 등

차. ’19. 6. 12. 개정,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 12. 11.)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정([별표7])

카. ’18. 12. 31. 개정, ’19. 7. 1. 시행

- 목욕장의 욕조수 1리터당 1,000CFU 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목욕장의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업자가 객실·욕실 등을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여 위생관리기준을 강화([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7])

2025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제2편

공중위생 영업소

Ⅰ. 공중위생영업 정의

가.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트리하우스'(시·도 조례 지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숙박업서비스 시설로 이용하는 마을공동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고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법 제2조)
- 비교적 단기간을 예정(장기투숙도 가능), 영리성, 계속·반복성, 내부설비, 요금체계 등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법제처 유권해석 및 각종 판례)
- 명칭이 아닌 실질을 판단(숙박이 주목적인 자에게 숙박공간과 숙박서비스 제공 시 숙박업에 해당)

참고 사례

- 육군훈련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 면회객 휴식공간 운영하는 경우 미해당
- 특정인 한정 숙박시설 제공의 경우(미공군 단기숙소, 회사 기숙사) 미해당
- '고시원'은 원칙적으로 미해당
- '파티룸', '다이어트 합숙소', '일주일 이하의 단기임대' 등 실질적으로 숙박인 경우에는 해당
- 특정목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해당
  (예: 종교활동을 위한 기도원, 템플스테이, 24시간 학습을 위한 독서실, 고시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학습장)

〈참조〉 숙박업 판단기준(각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연번	세부지표	숙박업 판단기준
1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 시설 구조가 일반적인 숙박업과 유사한지 확인 ⇒ 객실은 침실과 욕실로 분리, 침실에는 침대와 침구 등, 욕실에는 샤워시설 등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객실의 크기와 설비 수준에 따라 등급 등이 나누어져 있는지 여부 ⇒ 카운터(로비)와 객실, 객실로 통하는 복도로 구성되어 통상 숙박업에 적합한 구조나 형태인지 확인
2	영업의 구조	· 영업주가 예약사이트에 대외적으로 숙박업으로 광고하여 이용객을 모집하였는지 여부 등
3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 장소(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투숙에 필요한 침구, 가구 등을 함께 제공하고, 청소 서비스, 용품 교체, 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사업주가 광고 내용, 이용객 후기 등으로 확인
4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 사용료를 객실별로, 그리고 주중이나 주말 등으로 나누어 1일(또는 1박)당 이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 예약취소 시스템이 숙박업과 유사한지 여부 ⇒ 사용료를 매일 징수하였다면 숙박업에 가까움. 단, 장기 투숙객의 경우 월 단위 정산이나 퇴실 시 정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지급 시기'보다 중요
5	시설 이용기간	· 1개월 미만의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1개월 이상 이용을 하는 경우에도 숙박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6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이 없으면 숙박업에 가까움.
7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 귀속주체	· 물적(객실 및 관련시설) 시설 관리 및 공과금(전기료등) 부담 주체가 이용자가 아닌 영업주에게 있을 경우 숙박업에 해당
8	시설의 운영형태	· 시설에 주차 등 편의시설이 있고, 이용자가 객실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집기나 식사, 편의시설 사용 이용요금도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 · 이용 및 입주 규정이나 규칙이 있고 숙박업에 가까운지 여부 ⇒ 예를 들어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흡연적발 시에는 즉시 강제 퇴실, 방문객 숙박은 불허하며, 방문 시에는 22시까지 퇴실, 이성(異性)간 입실불가, 5일 이상 무단 연체 시 임의로 퇴실 조치 등의 규칙이 있으면 이용자의 독자적 점유·관리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숙박업에 가까움.

※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4. 선고 2020노80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 1225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6. 선고 2002누26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1누510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7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노2324 판결

※ 숙박업 관리체계 및 관리부처 다원화

*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부처 정책 및 법령개정 등 변동 가능하므로 관계부처 확인

<table>
<tr><th>근거법령
(취지)

[소관부처]</th><th>「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
[보건복지부]</th><th colspan="4">「관광진흥법」
(관광산업진흥)

[문화체육관광부]</th><th>「농어촌정비법」
(농어민소득증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소관업태</td><td rowspan="2">-일반숙박업(취사금지)
: 일반호텔, 모텔, 여관

- 생활숙박업(취사가능)
: 레지던스, 콘도

※ 「공중위생관리법」상 모텔, 여관, 콘도 등 업종 구분은 없으며

위생관리 취지에 따라 취사시설 유무로 구분 관리</td><td colspan="4">주요유형</td><td rowspan="2">농어촌민박</td></tr>
<tr><td>관광숙박
(관광호텔, 콘도,
관광펜션)</td><td>야영
캠핑</td><td>한옥
체험업</td><td>외국인
도시
민박</td></tr>
<tr><td>영업신고
(등록)시설·
설비 기준</td><td>창문, 환기설비
객실별 욕실 등</td><td>객실 수, 면적,
소유권 등</td><td>야영
시설 등</td><td>한옥</td><td colspan="2">주택규모(면적), 영업일수,
집 주인동거 등
(각 법령에서 규정)</td></tr>
<tr><td>건축물
용도제한
(건축법
시행령)</td><td colspan="2">숙박시설</td><td>수련
시설</td><td>-</td><td colspan="2">주택</td></tr>
<tr><td>안전관리</td><td colspan="2">※ 관련법에서 '숙박시설'(용도)를 기준으로 규율
- 건축법 : 건축기준(국토부 등)
- 소방시설법 : 스프링클러, 가스경보기 등 (소방청)
- 가스법령 : 보일러 등의 안전설비(산업부) 등</td><td colspan="2">관련법령 외에
관광진흥법령에서
자체
별도 규정</td><td colspan="2">※ '주택'(용도)를 기준으로 규율</td></tr>
<tr><td>위생관리</td><td colspan="2">「공중위생관리법」[1)]</td><td colspan="2">「관광
진흥법」</td><td>「관광
진흥법」</td><td>농어촌정비법</td></tr>
</table>

1)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가 의제되므로,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

※ 기타 유형별 근거법령
- (산림청) 산장(「산림휴양법」, 산림복지시설(「산림복지법」)
-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 (시·도) '트리하우스(살아있는 나무위에 건축하여 숙박영업)'(「지역특구법」)
- (제주도) '휴양펜션'(「제주특별법」)
- (농림부·해수부) 숙박업서비스 시설로 이용하는 마을공동시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나.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공('가목', '목욕탕')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나목', '찜질방')
- 목욕장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찜질을 할 수 있는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참고 사례

- 1인 세신샵(샤워시설, 개인욕조, 탈의실, 세신용베드가 있는 목욕실을 갖추고 있는 업소) 해당(가목)
- 참숯과 목초액 제조시설에서의 찜질 영업(통칭 "전통 숯가마") 해당(나목)
- '편백효소욕', '면역공방' 운영 및 맥반석판, 반신욕기, 핀란드식 사우나 등 설치 이용은 찜질 영업 해당(나목)
- 아파트 내 주민복리시설에서의 영업: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 영업 시 해당
- 체력단련장(헬스장)에서의 찜질설비 설치·영업 해당(나목)
- 소수가 가볍게 땀을 씻을 수 있도록 샤워설비만(욕조 X, 찜질 X) 갖춘 경우 미해당

다. 세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예 드라이크리닝 세탁, 운동화 전문세탁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의 세탁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

참고 사례

- 셀프 세탁소, 코인 빨래방 (손님 스스로 세탁)은 미해당
- 세탁 중개점(수거, 배달만 할 뿐 본·지점에서 세탁처리)은 미해당, 본·지점은 해당

  ※ 위 2개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여 세탁, 오염제거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탁업에 해당
- 특정 세탁물만 처리하는 경우(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세탁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장·리조트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체육복·침대시트 등만 세탁처리)는 미해당

라.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
-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 호실/입주 청소/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공중이용시설' 개념이 삭제되어 '일정규모' 판단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참고

참고 사례

- 아파트, 주택 등 개별 가정집의 실내청소(입주청소)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미해당
- 음료수 공급관(맥주, 커피 등) 등 세척업은 미해당

마. 이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바.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 모양내기·머리 피부 손질·머리카락 염색·머리 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화장·분장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 종합미용업: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이·미용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주요 질의 사례

1) 두피관리숍: 이용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 이용업과 일반미용업의 머리피부손질의 업무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두피 또한 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부미용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2) 붙임머리숍: 일반미용업
   • 머리카락에 인조모 등을 연결하여 머리길이를 연장, 풍성하게 하는 것은 일반미용업의 업무범위(머리카락 모양내기)에 해당, 다만 단순히 제조된 인조모를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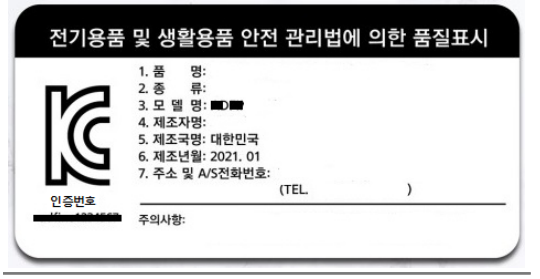
3) 마사지숍 vs 피부미용업
   • 손님의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피부관리 행위는 피부미용업에 해당하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거나 혈액순환 촉진, 통증 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경우 안마에 해당할 수 있어 행위의 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 필요

피부미용업소 기기 사용 관련 안내

피부미용업소 미용기기 사용 관련 주의사항

- 피부미용업소에서 피부관리를 위한 미용기기(전기용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KC인증)을 사용하여야 함

KC 인증 표기 (예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안전 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 및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은 제품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라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사용은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피부미용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미용기기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위생교육에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Ⅱ.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시설·설비 기준

1 신고

가. 근거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영업신고의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다. 신고처리 기관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라. 신청 서류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지침 서식 제1호 참조)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확보 증명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3799(2022. 5. 25.)호 참고

  ※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 신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확보 증명 서류' 확인할 것
-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국유철도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국유철도외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위임장) 제출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행정기관에 제시

마. 영업 신고 서류 검토

-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사용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제출 시 제외)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 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이용사·미용사 면허소지자만 영업신고 가능

- 신고서류 검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에 의한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유무 검토

    * 미용업 세부 업종 간은 같은 종류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미용사의 업무 범위 및 면허를 각 영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적용 대상	같은 영업 금지기간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영업금지기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년	1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1년	6개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을 말함

- 이·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정지 여부 및 면허취소 여부
- 미용업의 경우 미성년자의 영업 신고 시 확인 사항
  - 「민법」 제8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며, 「상법」 제6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 등기를 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로개설 예정지역 여부 및 지역 구분에 적합한지 여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및 위법건축물 등재 여부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기타 관계법령 등

별개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 시 검토사항

숙박업 영업신고 하려는 자가 각각 지번이 다른 별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 여러 개에 대해 영업신고 하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기준으로 건물의 개수 등을 영업신고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수개의 건물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업신고 하는 것도 가능함
- 별동건물이 각각 소재지(지번)가 다른 경우의 영업신고는 각 건물간의 거리, 인접 정도, 행정 관할이 달라지는 지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
- 대체로, 인접한 별도의 건물로서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고, 단순히 지번만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업신고하여 종합적으로 위생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생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건물별로 분리신고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바. 영업신고증 교부

- 새올행정시스템에 신규업소로 등록
-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 시행

기타 관계법령 참고사항

공통

○ 「건축법」상 용도 관련사항(건축물대장 확인, 필요 시 건축부서 협의·확인)
-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에 따름
  -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단, 이·미용원, 세탁소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됨
  - 숙박업: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 ▸ 건물위생관리업 '사무실'은 국토부 해석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
  -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사무실)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상 '창고시설'도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나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소매시장)에 포함되므로, **판매시설(소매시장)** 용도에서 세탁업, 이·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 목욕업 신고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
- ▸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 출입구(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
  - 숙박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 출입구(문),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참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 대상업종 : 목욕장업, 숙박업(50 객실 이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참조

숙박업소

○ 숙박업소의 로비, 접객대
- ▸ 접객대, 로비시설 등은 필수 시설로 해석(판례)
  ※ 접객대, 로비시설, 복도 등도 소독 등 위생관리 대상(시행규칙 별표4 참조)
- ▸ 접객대, 로비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설치
- ▸ 별동으로 영업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동에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현장판단 필요

○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회신
- ▸ **(질의1)**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인 층에는 객실만 존재하고, 접객대 등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 아닌 층인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어있다면 영업신고 수리 시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 **(답변1)** 「건축법」은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숙박업의 필수시설인 접객대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판단, 영업신고 시 접객대가 숙박시설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될 수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 신고하도록 조치

기타 관계법령 참고사항

► **(질의2)**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 시 접객대를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 아닌 객실에 설치하는 경우, 로비시설·출입구·복도·계단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 사용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없이 영업신고 가능한지?

- **(답변2)** 숙박업소에서 접객대 및 로비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비 등이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본래 로비에 설치된 접객대 사용에 대한 의결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본인이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유부분(객실)에 접객대 및 로비 설치는 가능**하며, 이 경우 공용부분의 접객대 및 로비에 대한 권리확보증명서류는 제출 불요

※ 접객대* 및 로비가 설치된 객실은 불특정 다수인 출입이 가능하고 숙박시설 이용객 및 행정청이 영업주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

*** 접객대는 본래의 기능(숙박요금표 게시, 입실·퇴실 접수, 고객 민원 응대, 응급 상황(화재, 사고, 감염병 발생 등)에 대한 신속 대처, 청소년 이성 혼숙 등 예방)이 가능해야 함**

○ 접객대 필수설치 관련 판례(부산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584 판결)

► 행정청은 숙박업 신고 심사단계에서 영업주체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법 및 시행규칙에 정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숙박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봄.

○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숙박업소의 경우 재난배상과 관련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숙박영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상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관련 관할 관청의 확인(심의) 필요

공유미용실(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

○ 1개 영업장 내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 시설(샴푸실, 고객대기실 등) 및 설비(샴푸대, 열처리 파마기기 등) 공유 가능

○ 사업 신청 및 접수 등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02-6050-318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지원팀(02-6009-3705)

○ 실증특례부여 조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원인제공자 처벌 또는 처분(다만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동책임), 입점미용사 모두 영업신고 필수

► 실증 승인기업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통해 확인(산업통상자원부 발급)

2 변경신고

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처리

- 신고대상 변경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단,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미만의 증감 시에도 변경 신고해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의 세부 업종 간의 변경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 변경 신고사항이 영업소의 소재지,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인 경우에는 변경 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필요
- 제출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미첨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 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공중위생관리법」의 변경 신고는 사전 신고를 의미
- 변경신고 처리 : 즉시
  ※ 기존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되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
-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신고 시와 동일

기타 참고사항

행정처분 보류 중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허가 가능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제재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어떠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경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였다면 관할관청은 수리가 가능함.

3 폐업신고

가.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나. 제출서류 : 영업 폐업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다. 직권말소

- 공중위생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법 제3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
  -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된 영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 상황(시설 및 설비 철거 등)인 경우는 직권말소로 처리하고 영업시설과 설비가 존치하는 등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조치

이·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의 폐업신고(법 제3조제3항)

- **(신고기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영업 폐업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라. 참고사항 : 폐업신고 간소화(시행규칙 제3조의3 제3항 및 제4항 관련)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 법에 따른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폐업신고서식을 함께 제출받아 같이 처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시행규칙 제3조의4)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사항 직권 말소 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기관(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

4 지위승계 신고

가. 지위승계 신고 대상

- 영업 양도 시 양수인,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
-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아래 절차에 의해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자만이 지위승계 가능

나. 신고기간 : 승계 후 1개월 이내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 신고 제출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영업을 상속하여 계속하는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상속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함. 단,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생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요(신규영업자와 동일)

  - 지위승계신고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 가능(이 경우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

라. 서류 검토내용

- 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적용 여부
- 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같은 영업금지 대상 여부
- 이·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정지 여부 및 면허취소 여부
- 기타 관계법령 등

기타 관계법령 참고사항

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의 개설 사실을 시·군·구에 통보한 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승계 대상에 해당함.

해당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할관청이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여야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관할관청은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적법한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 신고로 보기는 어려움.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받은 경우'의 의미

► 숙박업 영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의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별도로 신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사업자와 같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숙박업 영업을 위해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의미하며, 시설집기(비품 등)의 인수 여부는 지위승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임. 이는 통상 경매관련 문서에 기재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므로, '시설 및 설비 전부의 인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추가 시설 및 설비 없이 정상적인 영업 가능 여부, 지위승계 관련자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분쟁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2024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질의 회신·해석 사례집 참조)
- 경매 물건으로 부동산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위승계 행정절차 이행만으로도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위승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5 공중위생영업 시설·설비 기준 주요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나. 공중위생영업장 시설·설비 분리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
  - 영업장과 그 외의 구역을 칸막이 또는 커튼으로 구획 가능
  - 육안으로 보아 독립된 영업장으로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구획 필요
    (예 : 각각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정식 칸막이를 높게 설치)
    ※ 각 영업별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및 기타 관계법령 등 확인 필요

-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영업신고를 각각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 포함)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각의 시설이 선 또는 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숙박업 외 다른 영업장과는 시설 및 설비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

  -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이·미용업소에서 완제품의 화장품(샴푸, 염색약 등)을 소규모로 판매하는 경우
    (예 : 화장품 진열 공간 등)
    ※ 다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이·미용 영업장의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함

    *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

    ※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 구매한 해외 직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법」 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다. 숙박업소 시설·설비 기준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필요
  ※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실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도 영업신고 가능

  -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 가능

숙박업 시설·설비 관련 참고사항

숙박업(생활)은 고정형 취사설비 설치를 원칙

- 객실 내 이동식 화기(연료불문, 전기포함) 등을 구비한 경우는 가급적 불인정 (이 경우는 설비기준 위반으로 지도·처분 가능)

* 취사시설 관련 판례

· 취사란 사전적으로 불을 때고, 밥을 짓고, 요리를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사시설이란 위와 같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및 시설을 총칭
이에, 건축물에 설치된 쿡탑(전기, 가스 등 이용하는 내장형 레인지), 싱크대는 취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봄.
아울러, 쿡탑, 싱크대 및 연결 배관이 일체로 설치된 상태에서 쿡탑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제거된 자리에 가스레인지, 전기인덕션, 휴대용 쿡탑 등 가연성 취사도구를 비치하여 싱크대와 일체로 취사행위가 가능하다면 취사시설로 해석함(2019경기행심1053 참조)

※ 참고

① 면적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가스누설경보기 등 각종 안전설비 설치 대상(소방시설법 등)

② 비위생·해충 발생 가능성, 음식물쓰레기 등 일반형과 다른 관리가 필요

- 객실별 각각 설비가 원칙이나, 객실별로 설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 취사장을 갖춘 경우에는 전체를 생활형 숙박업으로 신고 가능

숙박업(일반) 시설은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하므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 또는 이동식 취사도구 사용에 대한 점검 및 계도 필요(소방청 협조)

하나의 주소라도 일반형과 생활형이 나뉠 경우에는 구별하여 별도 신고·관리 가능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서 "동"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라면 시설·설비기준 요건 충족

※ 숙박업 영업신고 시 영업자는 숙박시설 및 설비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해당신고가 관련법상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고수리가 가능함(대법원 판례(2017.5.30. 선고 2017두34087) 참조).

접객대는 숙박업의 필수 시설 : 부산 고등법원 판례(2012누584 판결)

-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인 점
-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숙박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접객대 · 로비 · 복도 등을 매월 1회이상 소독하고, 조명도를 일정 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며, 숙박요금표를 게시할 것을 정하고 있는 점
- 숙박업자가 위의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조명 불량, 접객대 숙박요금표 미게시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객실 · 접객대 · 로비시설 등은 입법자가 숙박업 영위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라는 전제하에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라. 목욕업소 시설·설비 기준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 하여야 하며, 영업 방식별로 일부 시설은 설치 제외 가능
  -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 목욕실: 맥반석·황토·옥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게 하는 목욕장업(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자가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
-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 이하 같음),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이하 같음)은 실내가 잘 보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설치 불가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영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은 각각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
- 욕조수를 순환·여과하는 경우(순환여과식)에는 여과기 직전에 자동유입기(타이머 방식의 반자동 포함)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자외선 살균 장치를 설치
-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가능. 이 경우 설치 사실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함

마. 이용업소 시설·설비 기준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영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불가

바. 미용업소 시설·설비 기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사.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참조)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2가지 이상의 미용업을 영업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영업 가능

- 하나의 장소에서 ① 1인이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거나 ② 2인 이상이 각각 미용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사용 가능

예시 ① 미용사A(일반+피부), 미용사A(일반+네일+화장·분장) 등 해당
② 미용사A(일반)+미용사B(일반), 미용사A(일반)+미용사B(피부), 미용사A(화장·분장)+미용사B(네일)+미용사C(네일) 등 해당
①+② 미용사A(일반+화장·분장)+미용사B(피부), 미용사A(피부)+미용사B(네일+화장·분장)+미용사C(네일) 등 해당

① 1인이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 해당 미용업의 종류별로 모두 영업 신고하여야 함

② 2인 이상의 영업자가 각각 신고를 하고 영업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 각 영업자별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생교육 이수 등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 각 미용업별 시설·설비 기준을 모두 충족(각 시설은 선·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함)
- 개별영업장 면적은 타 영업자의 영업장과 중복될 수 없으며 영업자별 사용 면적을 구분하고 각각의 시설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므로, 시설·설비를 공유할 수 없음
- 기 신고된 영업장을 공동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존 영업소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

※ 기 신고된 영업장을 공동사용 하고자 하면서 기존 영업소의 면적의 3분의 1 미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상 영업장 면적 조정

※ 최종지불요금표 외부 게시 의무(66㎡ 이상)는 변경된 영업소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예시 120㎡ 면적의 공간을 각각 60㎡씩 영업신고(구획 없이 공동사용)한 경우 최종지불요금표 외부 게시 의무 영업소 미해당

※ 2인 이상 공동대표로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모두 소지한 면허에 한하여 영업 가능

예시 A(**일반**, 네일)와 B(**일반**, 피부)가 공동대표로 영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미용업만 영업 가능

이용사와 미용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자의 이·미용업소 모두 영업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상 다른 종류 영업 간의 겸업(兼業)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이용사와 미용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자는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여 동시 개설 및 운영이 가능(단, 한 장소에 영업신고를 같이하는 경우 각각 영업장이 독립된 영업장으로 분리(층이나 벽), 구획(칸막이, 커튼 등) 필요)

아. 세탁업 세탁용약품의 보관

- 세탁용약품은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하거나 창고 등 별도의 장소에 보관

세탁세제 안전관리 참고사항

-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법 제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를 설치·사용하거나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회수용 건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함(다만,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용량 합계가 30kg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만 적용)

  * 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석유계 용제

자. 건물위생관리업 시설·설비 기준

- 지름 25㎝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비치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
-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구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 장비
  - 다만, 「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업무시설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Ⅲ.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1 지도·점검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나. 점검 준비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집 및 관련 규정집
- 카메라 및 통신장비
- 공중위생감시원증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검체수거에 따른 수거증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및 수거에 따른 준비물 등

다. 검사 대상물 수거 및 검사 의뢰

-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대상물을 수거한 경우 수거증 교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검사의뢰는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

라. 위생감시 대상 및 중점 점검내용

- 공통사항 : 업종별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불법카메라(유사장치 포함) 설치 여부 등
  - 시행규칙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 시행규칙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목욕장업은 발한실, 목욕실, 탈의실 외의 장소에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가능(설치 사실을 게시)

☞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 또는 기계장치의 설치 여부 확인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 발부 가능

- 숙 박 업 : 숙박업소 청결, 소독실시 등 위생관리, 취사시설, 난방시설의 안전성·적법성 등
- 목 욕 업 : 수질, 소독 등 위생관리, 발한실 설치에 대한 적법성 등
  - 목욕장업자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원수 및 욕조수(남탕 및 여탕)는 매년 1회 이상 시행규칙 별표 2 Ⅱ(수질검사방법 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 다만, 수돗물 사용 시 원수 수질검사 하지 않을 수 있음.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함.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음
    - 매년 1회 이상 **시행규칙 제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검사의뢰)
        1.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예시 **목욕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사례**

○ (질의) 목욕장 여성 탈의실 내에 남성 정수기 수리기사가 출입한 경우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가능한지?

-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2) 목욕장업자 그 밖의 준수사항 중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은 손님이 목욕장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목욕장의 목욕실 및 탈의실에 입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해석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됨(대법원 판례(2013.12.12. 선고 2011두 3388) 참조)

○ (질의) 목욕장업소의 남탕 또는 여탕 중 일부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인 경우, 해당업소 전체 목욕물 수질검사 결과를 적합으로 처리 가능한지?

- (답변)「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이므로, 목욕장업의 경우, 목욕장업소에서 이용자의 건강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을 규정하여 목욕장업 영업자가 목욕물*을 적정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목욕물은 원수 및 욕조수를 통칭(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영업자에게 숯 목욕장업소 목욕물 수질 관리책임이 있다는 점,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수가 수돗물인 경우만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질검사 범위를 수돗물 원수를 제외한 목욕물(남탕 또는 여탕) 중 일부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음

- 이·미용업 : 면허대여 여부, 별실 설치 여부(이용업) 등
- 세 탁 업 : 세탁물·업소의 곰팡이 등 발생 여부, 유해 세제의 안전관리 등
- 건물위생관리업 : 비위생 처리장비(청소용구 등)의 구별 보관, 안전관리 등

마. 위생감시 요령

- 위생감시 전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 공중위생감시원증(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업소 등에 출입·검사 목적을 설명
- 용모는 단정하게 하고 예의 바르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
  - 처분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도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추가 검토
- 단속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상급자 또는 감독관에게 알려 신속히 대처

바. 위반유형별 확인서 징구 방법

예시 **시설기준 위반**

상기 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이용업 영업신고를 필하여 영업해 오던 중 ○○년 ○○월 ○○일 ○:○○경 공중위생 영업소 점검 시 이용업소에서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도면 내용과 같이 업소 내에 약○○㎡의 별실(밀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업소 시설 설치 도면(필요 시 사진)

- 위반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재 조치 : 영업정지 1월

예시 **면허증 대여 위반**

상기 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명의로 미용업의 신고를 필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년 ○월 ○○일 ○○:○○경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시 미용업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 경영인 ○○○는 미용사○○○를 고용하여 영업소를 개설,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미용사○○○는 실 경영인 ○○○에게 고용되어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면허대여 기간 :

☞ 위반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
☞ 제재 조치 : 미용사 면허정지 3월
※ 면허 대여자 및 실 경영인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예시 **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위반**

상기 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미용업의 신고를 필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경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시 미용업자는 업소 내·외부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제재 조치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개선명령
※ 법 제10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조치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위생관리의무 등"은 ①위생관리기준과 ②그 밖의 준수사항으로 구분됨(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개선명령 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위생관리기준과 그 밖의 준수사항 구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① 위생관리기준	② 그 밖의 준수사항
숙박업	가, 나, 다	라
목욕장업	가, 나, 다	라
이용업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미용업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세탁업	가, 나, 다	-
건물위생관리업	가, 나	-

예시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

상기 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정지기간 : ○○년 ○월 ○○일~○○년 ○월 ○○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동 기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경 상기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영업장 2층 ○○호실에 손님 ○○○ 외 ○○명이 투숙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영업장 도면 및 영업행위 장소의 위치

☞ 위반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제재 조치 :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2 행정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나. 행정처분 유형

-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면허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다. 행정처분 절차

-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사전통지 등을 실시 후 진행

라. 행정처분 결과 등록

- 공중위생영업소 행정처분 결과는 처분 확정 후 즉시 입력
  -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면허정지, 면허취소, 과징금부과
- 위반사항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내역도 입력

이·미용사 면허 관련 위반사항 적발기관과 면허 최초 교부기관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미용사 면허와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한 시·군·구는 면허최초 교부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절차 진행(면허 최초 교부기관은 면허등록관리대장에 해당 내용 기재·관리)

마.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19조 관련)

-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그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으로 처분
-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2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1을 더하여 처분
  - 3개의 위반행위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5일, 10일, 15일인 경우
    → 22일 영업정지 처분(15일+5일+2일)

-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횟수마다 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
  -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동일 사항을 2회 추가 위반한 경우 → 처분 기준이 개선명령인 경우 개선명령 처분.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0일 인 경우 영업정지 20일 처분(10일+5일+5일)
-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기간 계산 기준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수거 검사에 따른 경우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

❶ 같은 행위로 '19. 1. 2 처분(1차), '19. 12. 1 적발, '20. 3. 2 처분(2차), '21. 2. 1 적발된 경우 가장 최근 적발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차수는 3차에 해당

❷ 같은 행위로 '19. 1. 2 처분(1차), '19. 12. 1 적발, '20. 1. 2 처분(2차), '21. 2. 1 적발된 경우 가장 최근 적발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차수는 1차(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사실 없음)에 해당

❸ 예 수질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개선명령('19. 1. 2) 처분, 재검사 결과 적격('19.10월), 재차 검사 결과 부적격('19.12월)인 경우 행정처분 차수는 2차에 해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는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경감 방법
  -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경감
  - 영업장 폐쇄의 경우 3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
-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
-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❶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❷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25.4.23. 이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남녀혼숙 금지의무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24시간 찜질방 목욕장업 심야시간(22시~5시) 출입제한 의무 위반한 경우 적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에 따라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포함

청소년 남녀혼숙 금지(숙박업) 및 청소년 야간시간 출입제한(목욕장업) 행정처분 면제 관련 질의 ·응답

► (Q1)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의 범위는?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름
  ①「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②「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③「여권법」에 따른 여권
  ④「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
  ※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 신용카드, 민간기업 운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인인증은 불인정

► (Q2) 영업자(종사자 포함)가 신분증 확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란?

- ① 영업소에 설치된 CCTV 등 영상촬영기기로 영업자(종사자)가 해당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기록된 경우
  ② 청소년, 제3자(손님 등), 영업자(종사자) 등의 진술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Q3) 영업자가 손님 중 일부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손님이 청소년인 경우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한지?

- 영업자(종사자 포함)가 손님 중 일부만 신분증을 확인하였거나, 일부 늦게 도착한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면제는 어려움

- 다만, 평소 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등 영업자의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Ⅰ. 5.에 따라 행정처분 경감대상이 될 수 있음

바.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4편 Ⅱ.참고자료】 참조

3 과징금 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2(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과징금은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당해 위반사항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담하게 하는 행정 제재금

나. 과징금 산출 방법

- 연간 매출액은 관련 세무자료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신규사업 등으로 전년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금년도 매출액 자료 또는 업소 매출액 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과징금 결정
- 과징금의 납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의 현저한 손실, 사업여건의 악화,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12월 범위 내에서 3회 이내로 분납 가능
-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회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다. 과징금 기준(시행령 [별표1])

등급	연간 총매출액 (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	100 이하	9,400
2	100 초과 ~ 200 이하	41,000
3	200 초과 ~ 310 이하	52,000
4	310 초과 ~ 430 이하	63,000
5	430 초과 ~ 560 이하	74,000
6	560 초과 ~ 700 이하	85,000
7	700 초과 ~ 860 이하	96,000
8	860 초과 ~ 1,040 이하	105,000
9	1,040 초과 ~ 1,240 이하	114,000
10	1,240 초과 ~ 1,460 이하	123,000

등급	연간 총매출액 (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1	1,460 초과 ~ 1,710 이하	132,000
12	1,710 초과 ~ 2,000 이하	141,000
13	2,000 초과 ~ 2,300 이하	153,000
14	2,300 초과 ~ 2,600 이하	174,000
15	2,600 초과 ~ 3,000 이하	200,000
16	3,000 초과 ~ 3,400 이하	228,000
17	3,400 초과 ~ 3,800 이하	256,000
18	3,800 초과 ~ 4,300 이하	288,000
19	4,300 초과 ~ 4,800 이하	324,000
20	4,800 초과 ~ 5,400 이하	363,000
21	5,400 초과 ~ 6,000 이하	406,000
22	6,000 초과 ~ 6,700 이하	452,000
23	6,700 초과 ~ 7,500 이하	505,000
24	7,500 초과 ~ 8,600 이하	573,000
25	8,600 초과 ~ 10,000 이하	662,000
26	10,000 초과 ~ 12,000 이하	783,000
27	12,000 초과 ~ 15,000 이하	961,000
28	15,000 초과 ~ 20,000 이하	1,246,000
29	20,000 초과 ~ 25,000 이하	1,602,000
30	25,000 초과 ~ 30,000 이하	1,959,000
31	30,000 초과 ~ 35,000 이하	2,315,000
32	35,000 초과 ~ 40,000 이하	2,671,000
33	40,000 초과	2,849,000

4 과태료 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의무 위반행위(행정질서벌)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금전벌

나. 과태료 부과 대상(제22조 제1항~3항)

과태료 금액	대상행위
300만원 이하	■ 목욕장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조제2항) ■ 숙박업소,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조제7항) ■ 보고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9조) ■ 개선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법 제10조) ■ 이용업 신고 없이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법 제11조의5)
200만원 이하	■ 이용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조제3항 및 제7항) ■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 세탁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 ■ 건물위생관리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 ■ 영업소 외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한 경우(법 제8조제2항)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7제1항)
100만원 이하	■ 위생사 면허 없는 자가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19조의3)

다.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를 2분의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경우.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②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단,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 내에서 부과

①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위반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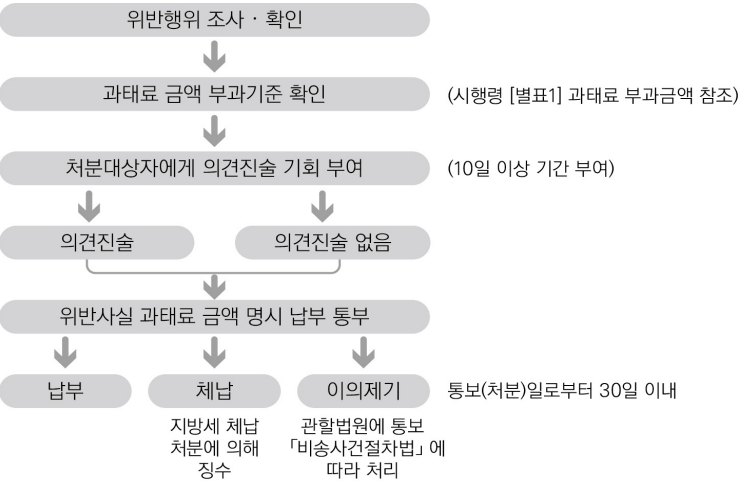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	150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	150
다.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80
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2호	80
마.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3호	60
바.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60
사.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90
아.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90
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5호	80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4호	150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5호	150
타.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6호	90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6호	60
다만, '24.1.1.~'26.12.31.의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20만원으로 한다.		
하.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	50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 과태료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함께 작성
-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마. 과태료 처분 불복

- 과태료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제기([서식 제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통보([서식 제4호]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 과태료 재판(관할법원-비송사건절차법)

※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 신청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증거서류(원본 또는 등본)
- 재판의 방식 : 결정(「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5 벌칙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21조(양벌규정)

※ 벌칙 규정은 형사처벌로서, 사법당국(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대상

나. 대상 및 형량(법 제2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숙박업 영업(법 제3조제1항 전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숙박업을 제외한 무신고영업(법 제3조제1항 전단)
  - 영업 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업한 자(법 제11조제1항)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 제1항 후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의2제1항)
  - 건전영업 질서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4조제7항)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법 제6조제3항)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법 제6조제4항)
  - 위생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법 제6조의2제9항)
  - 위생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법 제6조의2제10항)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자(법 제7조제1항)
  - 면허 없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한 자(법 제8조제1항)

☞ 관련 서식 : [서식 제5호] 고발장, [서식 제6호] 진술서, [서식 제7호] 확인서

6 봉인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서식 제8호] 게시문

나. 내용

- 영업소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업소 또는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폐쇄
- 영업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구 및 시설물을 봉하고 그 자리에 권한이 있는 기관의 관인을 찍어 보전케 하는 등 기구 및 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다. 봉인의 효력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손상, 은닉,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 해제 불가

라. 봉인 실시의 범위

- 봉인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치
- 봉인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한 때,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봉인 해제 가능

마. 봉인의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단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봉인을 할 때에는 영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봉인 조치할 것임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
  - 다만, 급격한 사유가 있어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구두로 통지함과 동시에 봉인 집행 가능
  - 이 경우 집행공무원은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참여 하에 봉인을 실시하되 참여인으로부터 봉인물품 보관증을 제출받아야 함([서식 제9호] 봉인물품 보관증)
- 봉인용지는 관할 시·군·구의 관인을 사전날인 받아 사용하되 사용할 시에는 봉인 집행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 날인한 후 사용

- 봉인용지 수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수불대장에 의하여 수불하여야 하고 관인 사전날인 대장의 날인 매수와 일치([서식 제10호] 봉인용지 수불대장)
- 봉인집행 물품은 봉인 물품대장에 등재 후 사후 관리하되 봉인용지 사용매수 및 번호를 기록하여 보존([서식 제11호] 봉인 물품대장)
- 봉인은 그 사유가 해제된 후에도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임의로 제거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할 시는 소정절차에 의한 결재를 받아 이해관계인에게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해제 가능

바. 봉인의 해제

- 시장·군수·구청장은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 가능

사. 봉인 집행 방해 또는 집행 효용한 자에 대한 조치

- 봉인 집행을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고발
- 봉인지를 제거, 손상하거나 봉인 물품을 은닉, 기타의 방법 등으로 봉인의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위반으로 고발 조치

Ⅳ.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 개요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2(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나. 위·해촉자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가능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다. 임기 : 2년

- 소속 단체장 등 요청으로 위촉권자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임기 연장 가능

라.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기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권자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2 위촉 및 해촉

가. 자격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단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나. 위촉

위촉권자는 자격이 있는 자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되 현재 공중위생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자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족 포함) 위촉 금지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희망자는 활동신청서를 작성 후 소속단체에 제출하고, 소속단체의 장은 활동 신청서를 ([서식 제12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신청서)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서식 제13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 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는 활동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신청서를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발급대장([서식 제14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 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장([서식 제15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장)과 감시원증([서식 제16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을 발급

다. 해촉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해촉
  - 추천받은 소속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 명예감시원이 공중위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경우(이 경우 그 가족을 포함)
  - 공중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
  -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추천기관과 소속 단체에 서면으로 통보
  - 직무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 실시

3 운영 및 관리

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시·도지사는 활동지역을 지정하여 시·군·구별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배정 가능
  - 필요한 경우 활동지역과 시·군·구별 배정 인원을 변경 조정 가능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배정받은 시·군·구에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조치
- 시·도지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중위생 관련 제반 정보사항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게 제공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무 관련 정보사항을 수집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

나. 교육훈련

- 위촉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실무 위주의 정기교육을 실시
- 신규 위촉자에 대해서는 위촉 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정기교육 시 포함하여 교육 실시 가능
- 교육은 실무 및 현장사례 위주로 실시하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는 지자체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교육내용은 공중위생관리 이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임무 및 활동요령, 불법·퇴폐영업 신고요령 등
-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해서는 매 활동 시마다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다. 활동 원칙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위촉권자가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독자적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는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활동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확인된 불법·퇴폐행위 등은 그 증거자료(사진 등)를 확보하여 공중위생감시원에게 제출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활동기간 중 및 활동 종료 후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일체 누설 금지

라. 활동비 지원 등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은 1인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0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수당 인상 및 활동일수 연장 가능
- 활동비는 계좌로 지급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활동사례비 지급 가능

- 시·도지사는 위촉 인원수 및 연간 활동일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활동사례비(수당) 예산을 확보
  - 다만, 시·도지사의 '명예감시원 자체운영계획'에 의하여 활동 일수 및 수당 등을 달리 정하여 지급 가능
- 사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비·물품을 지급하거나 대여 가능

4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거주지 등 연락처 변경 시에는 즉시 시·도 및 추천기관에 보고
- 활동이 우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표창 및 포상을 실시 가능
- 시·도지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중복 위촉되지 아니 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실태를 확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합동단속, 지도·계몽 등에 필요한 활동 일수는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여 운용

Ⅴ. 위생교육

1 운영 개요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나. 실시 단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7호)

교육대상	교육기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영업자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자	(사)한국목욕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용업 영업자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일반미용업 영업자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	(사)대한미용사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자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자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	(사)대한네일미용사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른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자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 영업자	(사)한국세탁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자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타 업종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위생교육은 수료 미인정

다. 교육시간 : 매년 3시간

라. 위생교육 방법 :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실시

마. 위생교육 대상

- 공중위생영업자
  -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 이수 필요(단, 이용업·미용업 제외)
  - 1개의 영업장에 영업신고자가 2인 이상(공동대표)인 경우 그 중 1인만 교육 이수하여도 인정(영업장 당 1명의 교육 이수자가 있어야 함)
-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
  -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기 위해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바. 위생교육 내용

-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함

사. 미용업 업종별 위생교육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주 업종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 종합미용업자의 경우 미용업 위생교육 실시단체 4개 중 어느 하나의 교육 이수 가능

아. 신규영업자 교육

- 신규 영업자교육(「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제14조제1항)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사전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이수 필요
  - 다만,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나, 교육 실시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가능

- 교육 유예기간(6개월 이내)이 영업 신고한 해가 아닌 익년도로 넘어갈 경우 익년도에 유예된 신규영업자 교육과 기존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함.

예시

2024년 11월에 영업신고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개시 후 6개월(2025년 4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는 경우 신규영업자 교육은 2025년 4월까지, 기존영업자교육은 2025년 12월까지 모두 이수해야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님(신규, 기존 별개로 과태료 처분)
* 위 사항의 경우 익년도 유예한 사실이 확인되면 2024년 교육실적 없어도 과태료 미처분

- 당해연도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한 경우 신규 영업자교육과 당해연도 위생교육 모두 받은 것으로 봄.

예시

일반미용업자 A가 2023년 3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5월에 폐업신고를 한 후 2025년 2월 동일업종인 일반미용업 영업신고 시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의 신규영업자 위생교육과 제1항의 당해연도 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자.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한 위생교육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가능

예시

2024년 2월 ~ 2025년 5월까지 휴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
→ 2024년, 2025년 위생교육 이수 대상(미수료 시 과태료 처분 대상)

차. 동일 소재지 내 2개 이상 영업소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위생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각각의 영업장별로 책임자를 임명하고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2개 이상 영업소가 같은 종류의 영업인 경우에도 동일함)

예시

숙박업자 A가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개 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에 대하여 각각 동에 대해 A 명의로 개별 영업신고한 경우, 각각의 영업장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함

2 위생교육 실시 기관 행정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 단체장에게 관할 구역의 공중위생영업자 중 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

  * 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등 포함)

  ※ [참고 5] 위생교육 실시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하여 명단 통보, 통보 주기·방법 등은 각 위생교육 실시 단체와 협의

  ☞ [참고 6] 위생교육 실시 단체 현황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 강의 등과 관련하여 실시 단체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공중위생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참석할 수 있고, 교육시간 내에 물품판매 등 교육취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Ⅵ. 공중위생영업소 실태 보고

가. 통계명 : 공중위생영업소 실태보고(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7043호)

☞ [참고 2-1]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나. 작성 목적

- 공중위생영업소의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 조사내용

-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 업소수, 지도점검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고발건수

☞ [참고 2-2] 공중위생영업소 실태보고 조사지침 등

라. 보고체계 및 보고주기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시·군·구 ⇨ 시·도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시·도 ⇨ 보건복지부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보건복지부 : 익년도 1분기 중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 공표

※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상 통계를 직접 입력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 입력 필수

마. 보고방법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서면(공문) 보고 불필요

- (시·군·구) 분기별로 각 조사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후 보고기간 내 보고
- (시·도) 관할 시·군·구 자료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보고기간 내 보고
- (보건복지부) 시·도 행정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보고 내용 확인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내 새올광장에 시스템 매뉴얼 참조
시스템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76-5800

바. 실태보고 통계 산출 기준

- 업소수 : 보고시점 기준 신고된 업소의 수
- 지도·점검 건수 : 보고시점 기준 신고 및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건수
- 위반 건수 및 행정처분 건수
  - 보고기간 내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위반내역 분류 기준으로 산정
    ☞ 면허 행정처분건수는 위반사항 적발 시·군·구에서 산정함

예시

2025. 1. 31. 숙박업 지도점검 결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면적을 3분의 1 이상 변경'한 위반행위로 2025. 2. 10. '경고'로 행정처분 한 경우

• 2025. 1. 31. 현재 : 위반 행위는 발견하였으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반건수 0, 행정처분건수 0

구 분	지도감시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신고사항위반	경고
숙박업	1	0	0

• 2025. 2. 10. 현재 :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위반건수 1, 행정처분건수 1

구 분	지도감시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신고사항위반	경고
숙박업	1	1	1

예시

창원시에서 받은 면허로 영업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공중위생영업소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알선'한 위반행위로 '영업소는 영업정지, 면허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됨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구 분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영업정지	면허정지
공중위생영업소	2	1	1

• 창원시의 경우

구 분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영업정지	면허정지
공중위생영업소	0	0	0

Ⅶ.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가. 추진목적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다. 평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위탁 가능)

라. 평가대상 : 평가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영업신고된 공중위생영업소

평가대상 예시
- '25년도에 평가 시 '24.12.31.까지 영업신고된 공중위생영업소('25년 신고업소는 평가대상 미포함)

마. 평가주기 : 격년

- 짝수해 :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 홀수해 : 이용업, 미용업(종합, 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바.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사. 평가항목

- 준수사항(법에 규정된 사항)과 권장사항(서비스 관련 사항)으로 구성

평가항목 예시(세탁업)
- 준수사항 : 세탁용 약품 보관함 설치, 보관 중인 세탁물의 위생관리 상태 등
- 권장사항 : 세탁업 표준약관 게시, 요금표 게시 등

아. 위생서비스 평가 등급

-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 다만, 평가 중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평가항목표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에서 제외 가능
- 우수업소: 황색등급
-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

자. 우수영업소 포상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로고제작 등) 가능
- 포상대상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업종별로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 중 10%* 이내로 하며, 자체 선정기준 마련 가능
  * 각 업종별 10% (예 : 일반미용업 녹색등급 영업소 중 10%, 숙박업 녹색등급 영업소 중 10%)

차.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표지판)

- 목욕업, 숙박업, 이용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표지판) 활용안 송부」 구강생활건강과-3271 (2009.12.11.)호 참조
- 네일미용업
  -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배포(우수네일업소)」 구강생활건강과-4616 (2015.8.5.)호 참조
- 화장·분장미용업 로고
  -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배포(우수메이크업업소)」 구강생활건강과-5884 (2017.9.20.)호 참조
- 업체 제작용 파일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사업 〉 제목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로고
- 로고 제작 시 원안을 유지하되 시·도 및 시·군·구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 가능

제3편

이·미용업 및 면허

Ⅰ. 이·미용업

1 이·미용사의 업무범위(시행규칙 제14조)

구분		면허종류	업무범위	비고
이용 학과 졸업·이수자 및 이용사 국가기술자격자		이용사	•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미용 학과 졸업·이수자		미용사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국가기술자격자	미용사	미용사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	'07.12.31. 이전 자격 취득자
	미용사 (일반)	미용사 (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08. 1.1.~ '15.4.16. 자격 취득자
	미용사 (일반)	미용사 (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15.4.17.~ '16.5.31. 자격 취득자
	미용사 (일반)	미용사 (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16.6.1. 이후 자격 취득자
	미용사 (피부)	미용사 (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미용사 (네일)	미용사 (네일)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미용사 (메이크업)	미용사 (메이크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	

미용사 자격 취득시기별 업무범위(시행규칙 제14조제2항관련)

자격취득일 / 국가기술자격명	~ '07. 12. 31.	'08. 1. 1. ~ '15. 4. 16.	'15. 4. 17. ~ '16. 5. 31.	'16. 6. 1. ~
미용사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미용사(일반)		일반, 네일, 메이크업	일반, 메이크업	일반
미용사(피부)		피부		
미용사(네일)			네일	
미용사(메이크업)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술

❶ 속눈썹 연장술 :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범위에 해당

※ 속눈썹파마: 대상 부위 및 속눈썹 연장술과 업무 유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미용사(메이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

❷ 자격 취득시기별 업무가능 여부

자격취득일 / 국가기술자격명	'16.9.22.까지 취득자	'16.9.23. 이후 취득자
미용사(일반)	가능	불가능
미용사(피부)	가능	불가능
미용사(메이크업)		가능

※ 2016.9.23. : 미용사(메이크업) 합격자 발생일자(공고기준)

❸ 눈썹 손질과 속눈썹 연장술

(2016. 9. 23. 이후)

구분	눈썹(Eyebrow) 손질	속눈썹(Eyelash) 연장술
미용사(일반)	업무범위에 해당됨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미용사(피부)	업무범위에 해당됨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미용사(메이크업)	업무범위에 해당됨	업무범위에 해당됨
미용사(네일)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2 업무보조의 범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
  -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이용·미용의 조력(助力)에 관한 사항
- 이용·미용의 조력(助力)의 범위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이·미용사 업무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아닌, 이·미용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사후처리 및 단순 보조행위로 한정

조력의 범위 예시

- 이용업 – 면도, 머리감기, 모발 건조하기, 염모제 도포
- 일반미용업 – 머리감기, 모발 건조하기, 펌제·염모제 도포, 로드와인딩
- 화장·분장미용업 – 기초화장품 바르기
- 네일미용업 – 제거제 도포
- 공통 – 잔여물 정리, 수건으로 닦기

3 영업소 외에서의 이·미용 업무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 외 장소에서 가능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예시는 거동이나 이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영업소 외 이·미용서비스는 영업소를 개설·운영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면서 예외적으로 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4 이·미용서비스 최종 지불가격 사전제공

가. 이·미용서비스 최종 지불가격 사전 제공

-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이하 "총액내역서"라 한다.)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 동안 보관

나. 총액내역서 제공 대상 및 방법

- 제공대상
  - 이·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 제공방법
  - 종이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내역서 : 종이 등에 양식을 인쇄하여 원본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사본을 영업자가 1개월 동안 보관(총 2부 필요)
  - 전산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 : 영업자 및 손님 모두 1개월 동안 해당 내역서를 보관·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손님에게는 종이내역서 등을 제공

* 시스템 등의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는 것 포함. 다만, 영업자 및 손님이 해당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여야 함

다. 총액내역서 포함사항

- 개별 이·미용서비스 항목(품목) 및 가격
  - 서비스 제공행위(주로 기본요금)와 추가 항목에 따른 가격
  - 염색제, 펌제, 영양제 등 제품명은 추가 금액 발생 시 표기(예시 참고)
  -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하여 비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사항 표기(예시 참고)
- 개별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전체 서비스 총액(합계액)
  - 개별 서비스 항목(품목)별 가격을 합산한 것

라. 서비스 항목 판단기준

- 이용업
  - 이용업소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이발', '머리감기', '면도'를 함께 제공(패키지)하는 경우 1개 항목으로 간주하나, 별도 제공 시 각각 1개의 항목에 해당되며, 염색 등 기타의 서비스는 별도의 항목
- 일반 미용업
  - 통상적 미용서비스 항목에서 기본요금 외에 추가한 행위나 제품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1개의 항목
- 피부 미용업
  - 서비스 제공부위 또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서비스가 추가되어 가격이 증액되는 경우는 각각 1개의 항목
- 네일 미용업
  - 서비스 행위별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이상 항목이면 해당
    (패키지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1개의 항목)
- 화장·분장 미용업
  - 서비스 행위별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이상 항목이면 해당

예시

총액내역서

□ (업소명)

고객명	박○○ 서명 박○○		
담당자	이△△		
서비스내용	기본요금	추가요금	비고
세팅파마	100,000 ①	20,000 ②	기장추가
		20,000 ③	A사 파마약
염색	50,000 ④	10,000 ⑥	기장추가
		10,000 ⑦	B사 염색제
모발클리닉	40,000 ⑤		
할인내역	5,000		
합계	245,000원		

비용발생 항목	세팅파마	기장추가 비용	고급 파마약 비용	염색	모발클리닉
항목수	①	②	③	④	⑤
총액내역서	제공대상 아님	제공대상 아님	제공대상	제공대상	제공대상

마. 총액 내역서 미제공시 행정처분

- 3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총액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분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영업정지 1월

5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제2024-86호('24. 5. 22. 개정)

가. 공통기준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
-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내는 등 관리

-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
- 기타 사항
  - 각 손님에게 세탁된 타월이나 가운(덧옷)을 제공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타월이나 가운(덧옷)은 사용 즉시 구별이 되는 용기에 세탁 전까지 보관
  - 사용한 타월이나 가운(덧옷)은 세제로 세탁한 후 건열멸균소독·증기소독·열탕소독 중 한 방법을 진행한 후 건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탁하여 건조 권장
  - 혈액이 묻은 타월, 가운(덧옷)은 폐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제로 세탁하고 열탕소독(100℃이상의 물속에 10분이상 끓여준다)을 실시한 후 건조하여 재사용
  - 스팀타월은 사용 전 8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사용 시 적정하게 식힌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타월 및 가운(덧옷)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독

나. 기구별 소독기준

- 기구사용 후

기구명	위험도	소독 방법
가위 바리캉·클리퍼 푸셔 빗	피부감염 및 혈액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	① 표면에 붙은 이물질과 머리카락 등을 제거 ② 위생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은 천이나 거즈로 날을 중심으로 표면을 닦는 등 관리 ③ 마른 천이나 거즈를 사용하여 물기를 제거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해면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닦는 등 관리 ②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 ③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브러쉬 (화장·분장용)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①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 ②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③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 기구명은 현재 일반적으로 이·미용업소에서 주로 사용·지칭하는 용어를 사용

- 영업종료 후
  -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일반기준에 의해 소독작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Ⅱ. 면허 신청 및 교부

1 개요

가. 신청인 : 본인

나.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

다. 신청서류

- 면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비 고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1장(3.5cm×4.5cm)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과정 이수자	• 이수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1장(3.5cm×4.5cm)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취득자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1장(3.5cm×4.5cm)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학점은행제학위증명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첨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1장(3.5cm×4.5cm)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정보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첨부)

2 검토 사항

가. 면허 신청 조건

- 이·미용 관련 학과 졸업(이수, 학위취득)자

❶ 고등학교(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전문대학(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❷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학과명만으로는 이·미용에 관한 학과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졸업증명서 외에 교육과정 증빙서류(예 : 성적증명서, 커리큘럼 등)를 제출토록 하여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 발급**

- 이·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이용장 및 미용장 자격 소지자는 면허 발급 대상 미해당

나. 면허 결격 사유(법 제6조제2항)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이·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결핵환자(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아래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등 중독자에 해당하게 된 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결격사유별 확인 방법

❶ 피성년후견인

구 분		조회기관	근 거
결격조회 요청기관의 확인대상	① 결격사유조회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② 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	가정법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②의 방법으로 확인 시 방법 및 절차 등은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내·외국인 동일 적용)
※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등 취업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 필요

❷ 건강진단서
- 발 급 일 : 최근 6개월 이내
- 발급기관 : 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포함내용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3 면허 반납

- 반납 :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명령 시(면허정지 기간 동안 보관)

별표 1 영문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요청 시 처리 방법

☞영문 면허증 발급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문 면허증을 번역하여 공증 받도록 안내

(영문 증명 예시)

Dongjak-gu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Tel:82-2 - 820-9204
Fax:82-2-820-9499

Date : . .

To Whom It May Concern
This is to certify that following person is licensed as a (*Barber/ Cosmetologist/ Esthetician / Manicurist / Makeup stylist 중 택*) in the Republic of Korea

Name in Full : (영문이름)
Sex : Male / Female 중 택
Date of Birth : (생년월일)
Nationality : 국적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주민등록번호
Graduated from : (졸업학교영문명 또는 해당 없음Not Applicable(N/A)로 표시)
Date of Graduation : (졸업일 또는 해당 없음Not Applicable(N/A)로 표시)
National Examination Date passed : (국가자격취득일 또는 해당 없음Not Applicable(N/A)로 표시)
License Number : (면허번호)
Date of Registration : (면허교부일)
Date of Renewal : (면허재교부일)

Signature : 기관장 영문 사인
Dongjak-gu, Seoul City
Republic of Korea

Ⅲ. 면허 재교부

1 면허 재교부 신청 개요

가. 재교부 기관 : 전국 시·군·구

나. 재교부 신청 사유

-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다. 신청서류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시행규칙 제10호 서식)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의 3.5×4.5cm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라.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에 따른 처리 절차

-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자가 1인 1업소 운영에 따라 면허증은 1인당 1장만 발급
- 면허자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면허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기존 면허증을 회수하고 추가로 취득한 자격의 내용을 명시하여 하나의 면허증을 재발급

예시

미용사(일반) 면허를 가진 자가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사(피부)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미용사(일반) 면허증을 회수하고 면허증의 직종에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를 함께 명시하여 하나의 면허증으로 재발급

2 면허 발급기관에 따른 처리절차

가. 시·도에서 발급한 경우

☞ '05. 3. 31.「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면허 관련 사무가 종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

- 시·도 이관 면허 초기자료 및 재교부 내역 등록
- 제출서류 및 면허정보를 조회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최초 면허번호 그대로 면허번호를 기재(예 : 제 경기 123456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인 날인하여 면허증 재교부

  ※ 이·미용사 면허 초기자료 개별등록 사용자 매뉴얼(참고 1-1)에 따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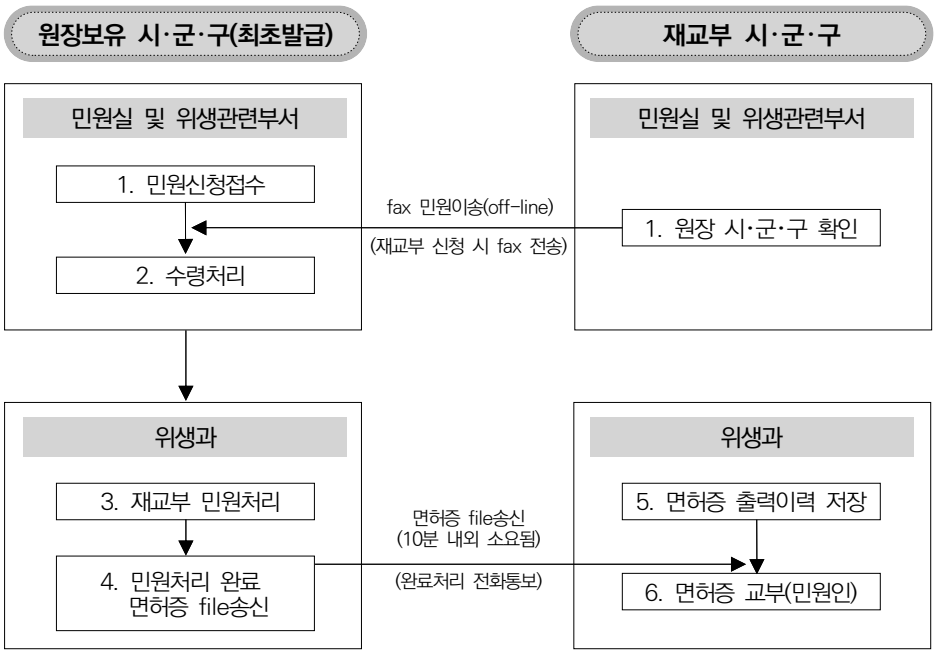
나.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교부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제출서류 및 면허정보 등을 검토하여 처리

다.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교부기관이 상이한 경우(관외 면허증 재교부)

- 이·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참고 1-2)에 따라 시행

관외 면허 재교부 절차



시·군·구별 업무 역할

재교부 시·군·구(민원 신청지)	면허 원장보유 시·군·구 (면허 최초 발급 시·군·구)
- 재교부 신청서 확인하여 최초 발급 시·군·구로 팩스 전송 - 최초 발급 시·군·구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이 송신되면 출력하여 교부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일반 문서 접수	-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입력 - 제출서류 및 면허정보를 조회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실이 없음을 확인 - 관인 날인하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재교부 시·군·구로 전송

2025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제4편

부 록
(서식·참고자료)

부록 Ⅰ. 관련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
서식 제1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81
서식 제2호	공중위생영업소 점검표	82
서식 제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83
서식 제4호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84
서식 제5호	고발장	85
서식 제6호	진술서	86
서식 제7호	확인서	87
서식 제8호	게시문	88
서식 제9호	봉인물품 보관증	89
서식 제10호	봉인용지 수불대장	90
서식 제11호	봉인 물품대장	91
서식 제12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신청서	92
서식 제13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93
서식 제14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94
서식 제15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장	95
서식 제16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96
서식 제17호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	99
서식 제18호	불법카메라 미설치 점검 확인증	100

[서식 제1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소명 :

위 치	층중 (지상, 지하) 층 호
면적(㎡)	
영업설비 개요 * 평면도 포함	*예시)* *○ 영업설비 개요* *- (건물위생관리업) 25㎝이상 마루광택기 2대, 집수 및 집진용 진공청소기 2대, 안전벨트·안전모·로프, 일산화탄소 등 측정장비 1대* *○ 영업장 평면도* *평면도 첨부*
안내사항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사항〉** ① 건축법 등 타법에 의한 위법사항 발견 시, 해당관련 부서에서 동 공중위생영업신고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용업의 경우 신고증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상이할 경우 면허대여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목욕장업은 발한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고 밀실형태는 불가하며, 이용업은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경우 전유부분, 공용부분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표시하여 기재 (예시: 전유부분: ○○ ㎡, 공용부분: ○○ ㎡, 접객대 ○○ ㎡)

[서식 제2호]

공중위생영업소 점검표

1. 업소현황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 적(㎡)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신고사항		
준수사항		
기 타		

점검일시 :

점 검 자 : (인) 확 인 자 : (인)

[서식 제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 내역	과태료 처분사유			
	처분의 고지 받은 일자	. . .	과태료 금 액	일금 만원
	부과기관명		납부통지서 번 호	. .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업 소 명 :
소 재 지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예시)

○ ○ 구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

수　　신 : ○　○　법원 귀중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아래「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동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어 우리 시·군·구에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2.「비송사건절차법」제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과태료 재판(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의 고지 일자	.　.　.	과 태 료 금　액	일금　　만원
	부과기관명	○　○　구청장	이　의 제기일자	.　.　.

증거서류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원본 또는 등본 1부.
2. 과태료처분 이의 제기 신청서 원본 또는 등본 1부.
3. 기타 관계규정 등 1부.　끝.

20　.　.　.

○ ○　시장·군수·구청장　㊞

[서식 제5호]

고 발 장

1. 피고발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2. 영업장소
   가. 업소명 :
   나. 소재지 :

3. 고발사유
   상기 피 고발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현재까지 상기 영업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무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 영업행위사실 :
   나. 영업의 형태 :
   다. 영업행위내용 :
   라. 과거 고발내용 :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가. 고발인 진술서
   나. 피고발인 확인서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경찰서장 귀하

[서식 제6호]

진 술 서

1. 소 속 :
2. 직 명 :
3. 성 명 :

상기 본인 등은 시 구 과에서 공중위생영업소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 년 월 일 시 분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에서 무신고 영업을 경영하는 업소를 다음과 같이 적발하였기에 진술합니다.

4. 적발내용

영업장소		전 화 번 호	
업 종		업 소 명	
업 주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시 설			
규모(㎡)			
영업행위의 내용			
과거고발내용			
비 고	※ 1일평균 매상액 등 주요참고자료 기재		

20 년 월 일

진술인 인
진술인 인
진술인 인

[서식 제7호]

확 인 서

1. 업소현황

대 표 자	성 명		업 종	
	주민등록번호		업 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소재지				

상기 본인은 위 업소의 (으)로서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해 오던 중 ○○시·군·구 공중위생영업소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아래 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틀림없이 확인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위반상기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로 . . .부터 현재 까지 영업을 해오다 . . . : ○○시·군·구 공중위생영업소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영업현황

요금	월매출액	연면적(㎡)	객실 수	종사자 수	비고
					냉장고: TV: 침대:

20 년 월 일

○ 확인자(업소) 성명 : (서명)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날인 거부 사유(상황) :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게 시 문

◦ 업소명 :

◦ 소재지 :

위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위반업소이므로 이용 및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형법 제140조(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영업정지 명령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됨

[서식 제9호]

봉인물품 보관증

품　　명	
보관장소	
봉인일시	

위의 물품은 ○ ○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본인의 책임하에 위의 소재지에서 보관하고 본인이 보관중 동 물품을 사용하거나 봉인을 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훼손치 아니하고 그 봉인의 효용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이 보관증을 제출합니다.

.　　.　　.

주소 :
보 관 자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제10호]

봉인용지 수불대장

연번	일자	수입	불출 장수	용지수령자내역			결 재		
				일련 번호	성 명	수령인	담 당	팀 장 (계 장)	과 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식 제11호]

봉인 물품대장

품 명	수량	보관자	봉인 일자	보관장소	봉인지 일 련 번 호	해 제 일 자	결 재		
							담 당	계 장	과 장

[서식 제12호]

<table>
<tr><td colspan="4">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신청서</td><td>사 진</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
(연 령)</td><td colspan="2"></td></tr>
<tr><td>자택전화</td><td></td><td>핸 드 폰</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학 력</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주 요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td></tr>
<tr><td colspan="5">20 . . .

(신청인) 소속 성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5">※ 사진제출 : 반명함 3매(3×4㎝)</td></tr>
</table>

[서식 제13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table>
<tr><td>① 성 명</td><td colspan="2"></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④ 추천구분</td><td>전공내용</td><td colspan="2"></td><td>⑤ 전화번호</td><td>(자택)
(직장)</td></tr>
<tr><td>경 력</td><td colspan="2">○○단체에서 ○○년 활동</td><td></td><td></td></tr>
<tr><td>⑥ 직 업</td><td colspan="3"></td><td>⑦ 직 장 명</td><td></td></tr>
<tr><td>⑧ 추천기관</td><td colspan="5"></td></tr>
</table>

위 사람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단체의 장)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제14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발행 번호	구별 연번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직 업	주 소 핸드폰 추천기관	사 진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서식 제15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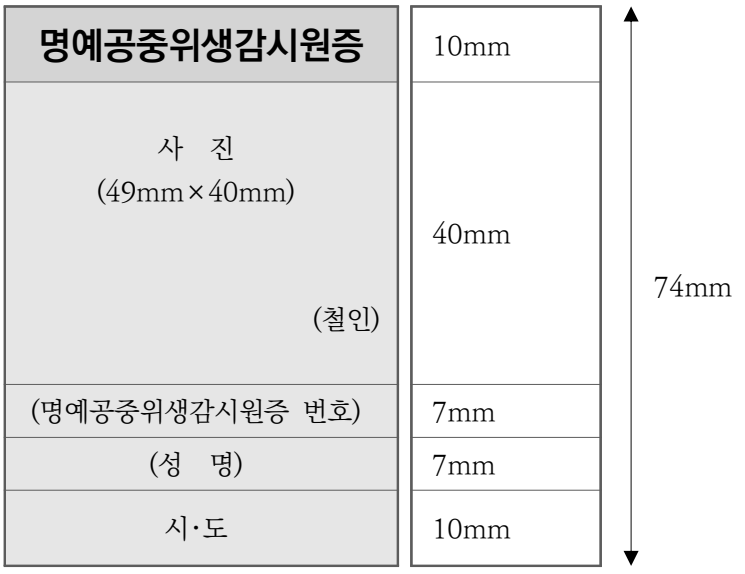
[서식 제16호]

(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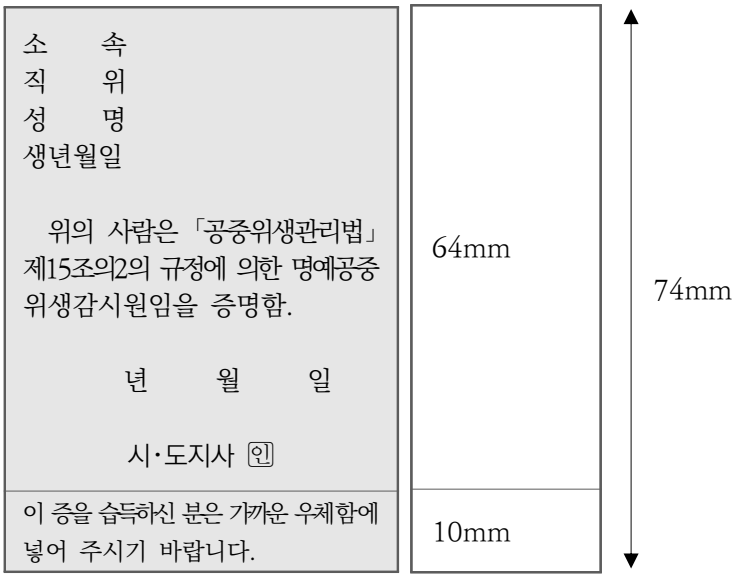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사 진 (3×4㎝)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의규정에 의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 . . **시·도 지 사**

제 - 호
1.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목적으로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 20 년 월 일까지

(예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10mm
사 진
(49mm×40mm)
(철인)
40mm
74mm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번호)
7mm
(성 명)
7mm
시·도
10mm

(앞쪽)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64mm
74mm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mm

(뒤쪽)

※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14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	16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장의 명의	14포인트	명조체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10포인트	명조체
위의 사람은 ····· 증명함.	10포인트	명조체
이증을 ····· 바랍니다.	8포인트	명조체

2)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3) 색상은 파란색

[서식 제17호]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

업소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객실현황		변동내역 * 영업신고 대비	
				객실 수 (개)	영업장 면적 (㎡)	객실(구분)소유자 변동유무	변동사항 * 증명서류 별첨
						O / X	■ ( )호 소유자 변동 - ( ) → ( ) - 계약기간 :

〈관련 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1. 숙박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4)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가)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나)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이하 생략)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상기인은 위 작성 서식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서식 제18호]

불법카메라 미설치 점검확인증

업소명	
업소 소재지	

위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규정에 의거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부록 Ⅱ. 참고자료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
참고 1-1	이·미용사 면허 초기자료 개별등록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102
참고 1-2	이·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104
참고 2-1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112
참고 2-2	공중위생영업소 실태보고 조사지침 등	113
참고 3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	118
참고 4	전국 공중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121
참고 5	위생교육 실시지침 및 관련 서식	151
참고 6	위생교육 실시단체 현황	164
참고 7	업종별 행정처분기준	165

참고 1-1 이·미용사 면허 초기자료 개별등록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1) 내 업무의 "위생 - 공중위생관리 - 이(미)용사면허관리 - 이(미)용사면허초기자료관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2) 신규면허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면허번호부터 입력한다. 면허번호는 1)과 같이 입력한다.

☞ 면허번호를 1)과 같이 입력하는 이유는 면허증 출력 시 최초보유기관에 입력한 내용과 면허번호에 입력한 내용이 함께 면허번호로 출력되기 때문임.

Ex) 서울종로구 2007-00

☞ 만약, 면허번호란에 시·군·구명을 입력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한다면, 최초보유기관에 입력한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출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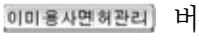
Ex)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2007-001

(3) 발급일자는 최초면허발급일자를 입력한다.

(4) 면허자 정보에서 내국인, 외국인 구분을 꼭 표시한다. 졸업내역과 자격내역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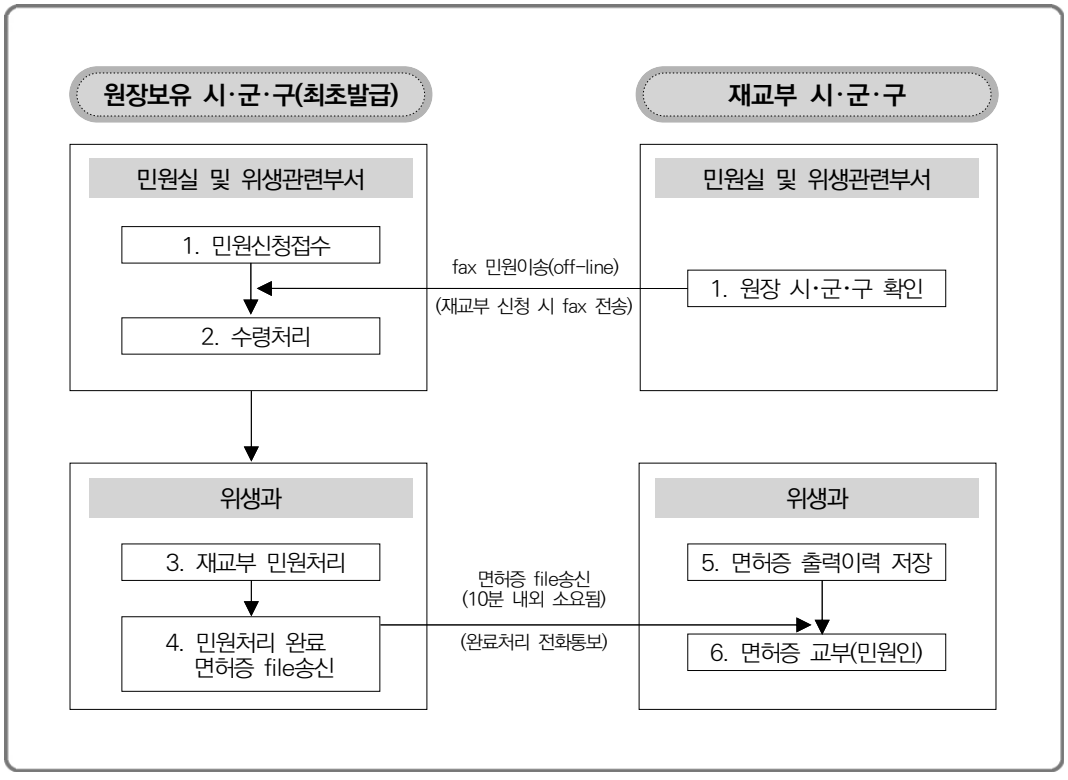
(5) 최초보유기관을 꼭 입력한다. 최초보유기관에 최초 보유 시·도나 최초보유 시·군·구를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6) 관련사항을 입력하고,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용사 면허 내역이 저장된다.

(7)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용사대장 화면에서 면허증을 출력할 수 있다.

참고 1-2 이·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1 관외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절차



2 면허 원장보유(면허증 최초 발급) 시·군·구 처리매뉴얼



2.1. 받은민원 〉 이(미)용사면허재교부신청_신청내역/첨부서류

(1) 내 업무의 받은민원 리스트에서 “민원명 –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처리단계 – 신청내역 입력”을 더블클릭하면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의 신청내역”을 처리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2)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 업무 중 신청내역을 처리하는 화면으로 기존 면허를 검색 후 기본내역을 출력하여 해당내용을 민원처리하는 화면이다.

(3) 기존 면허의 내용을 출력 후 교부사유를 선택하고 면허종류와 내·외국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내역이 저장된다.

(4) 아래 그리드에 항목 중 “첨부서류검토”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그리드로 바뀌며 해당 첨부서류를 선택할 수 있다.

(5)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선택하고 첨부서류저장 버튼을 누른다.



(6) 내역을 확인 한 후 민원결과버튼을 선택하여 민원결과를 해결로 등록한다.

(7)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신청내역첨부서류 화면으로 돌아가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민원처리를 한다.

2.2. 받은민원 〉 이(미)용사면허재교부신청-면허증전송 및 이력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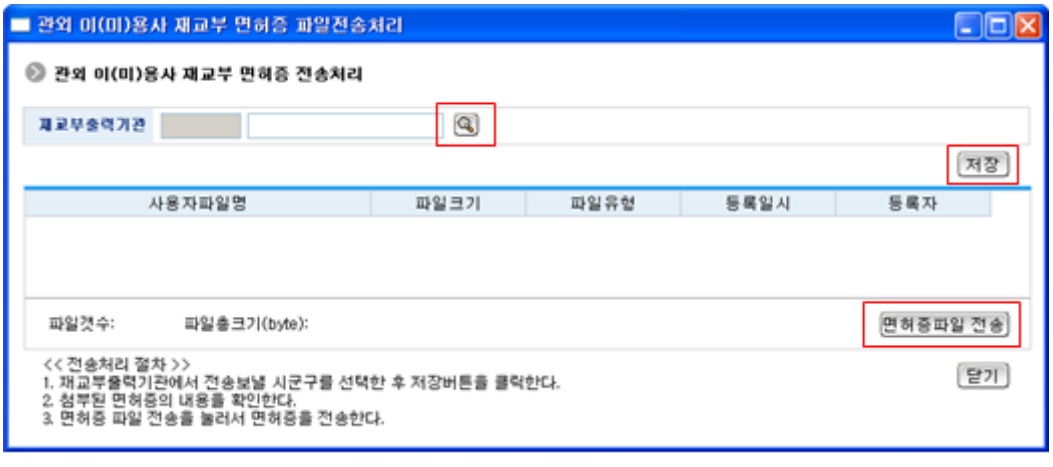
(1) 내 업무의 받은민원 리스트에서 민원명 -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처리단계 인가(허가)증발급을 더블클릭하면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의 면허증출력을 처리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2)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 업무 중 면허증출력을 처리하는 화면으로 신청단계와 서류심사에서 입력한 내용이 출력되는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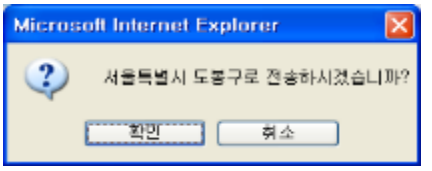
(3) 면허증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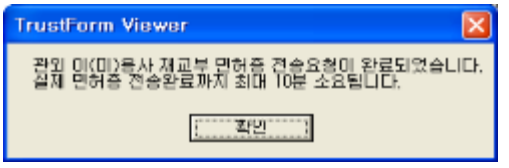
(4) 출력서식에 대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면허증파일 관외 전송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전송처리 화면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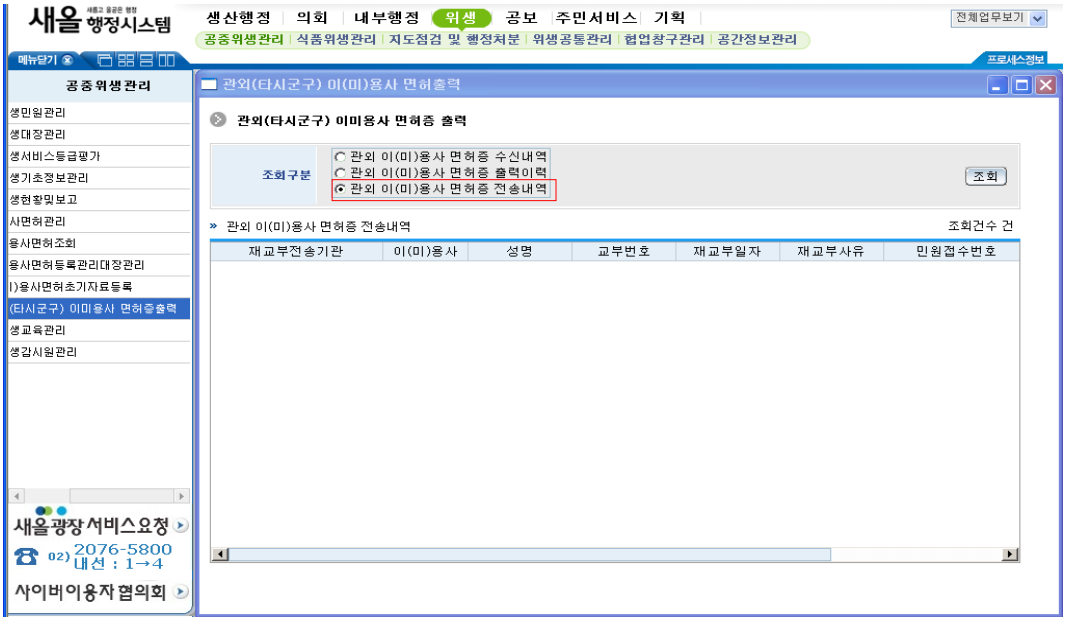
(5) 재교부 출력기관(면허증을 전송할 시·군·구)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재교부하려는 면허증이 PDF파일로 저장되며 면허증파일 전송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전송 확인 팝업이 출력된다.



(6) 전송할 재교부출력 시·군·구를 확인하여 전송한다.



(7) 면허증 파일 전송은 최대 10분정도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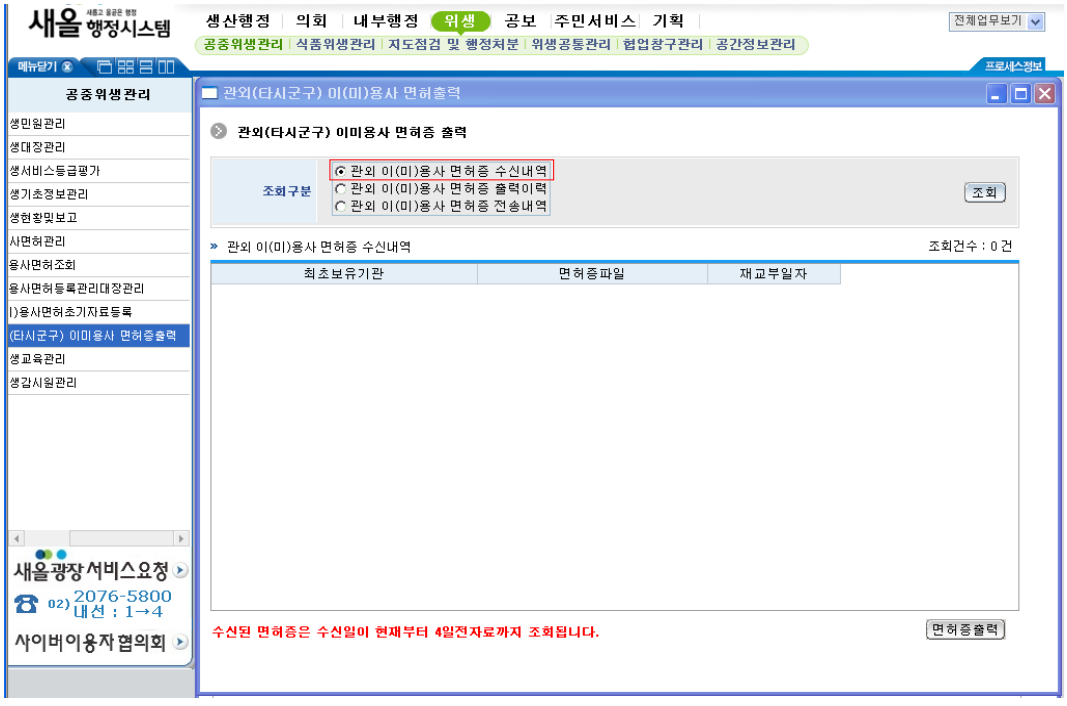


(8) 공중위생관리〉 이미용사면허관리〉 관외(타 시·군·구)이미용사 면허증출력 화면에서

(9) 관외 이(미)용사 면허증전송내역을 체크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타 시·군·구(재교부 출력 시·군·구)로 면허증을 전송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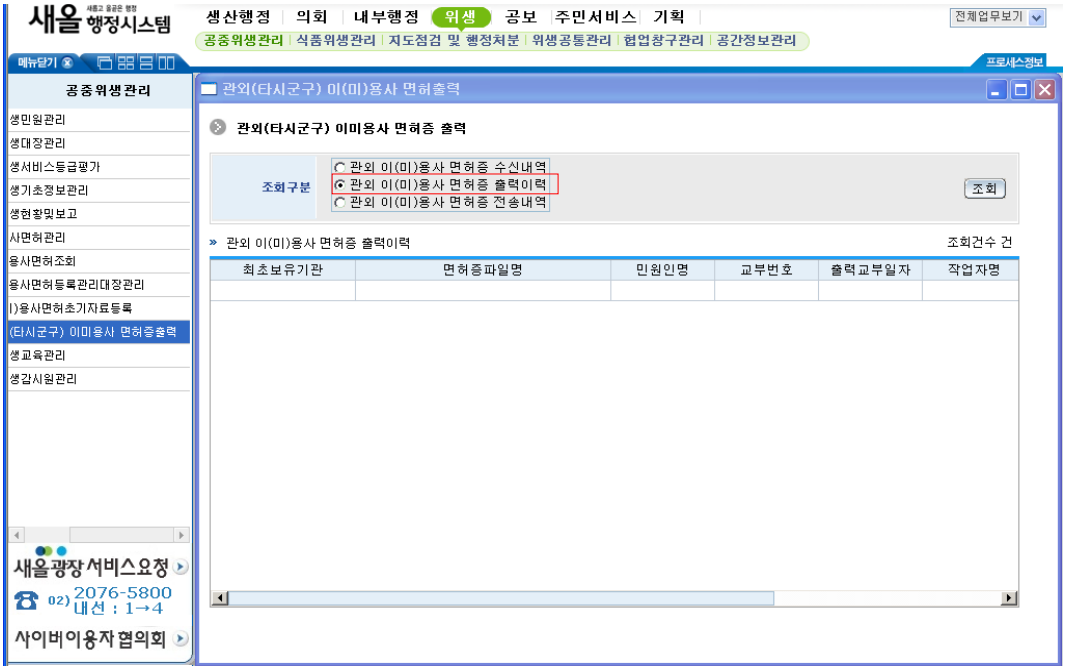
3 재교부출력 시·군·구 처리 매뉴얼

3.1 공중위생관리 〉 이(미)용사면허관리〉 관외(타 시·군·구)이미용사 면허증 출력



(1) 공중위생관리〉 이미용사면허관리〉 관외(타 시·군·구)이미용사 면허증출력 화면에서 관외 이(미)용사 면허증 수신내역을 체크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원장보유 시·군·구로부터 면허증 파일을 수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2) 민원인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면허증을 선택한 후 면허증 출력버튼을 누르면 출력이력 등록화면이 나타난 후 면허증이 미리보기 형식으로 출력된다.



(3) 관외 이(미)용사 면허증 출력이력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전송받은 면허증의 출력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참고 2-1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연도별, 업종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계	일반	생활					
2015	219,507	30,888	29,016	1,872	7,487	18,734	120,234	28,661	13,503
2016	227,596	30,971	28,657	2,314	7,288	18,304	129,012	27,832	14,189
2017	234,069	30,957	28,242	2,715	7,100	17,853	136,543	26,958	14,658
2018	238,816	30,644	27,471	3,173	6,911	17,435	143,512	25,784	14,530
2019	244,113	30,497	26,886	3,611	6,762	17,135	150,546	24,484	14,689
2020	243,815	29,679	25,746	3,933	6,439	16,422	153,345	23,134	14,796
2021	255,092	30,049	25,449	4,600	6,286	16,443	164,131	22,472	15,711
2022	262,053	29,733	24,655	5,078	6,025	16,118	172,708	21,363	16,106
2023	268,851	29,948	24,330	5,618	5,878	15,706	180,212	20,513	16,594

2023년 시·도별, 업종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단위 : 개소, 2023. 12. 31. 기준)

업종별 / 시·도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계	일반	생활					
합계	268,851	29,948	24,330	5,618	5,878	15,706	180,212	20,513	16,594
서울	43,440	2,469	2,363	106	688	2,444	30,904	3,676	3,259
부산	18,961	1,995	1,677	318	700	1,231	12,702	1,360	973
대구	13,385	718	697	21	248	872	9,867	1,070	610
인천	13,887	1,357	969	388	212	692	9,801	1,080	745
광주	8,881	620	590	30	169	398	6,399	816	479
대전	8,166	580	536	44	96	476	5,742	689	583
울산	6,395	645	598	47	168	418	4,350	380	434
세종	1,271	84	79	5	19	65	902	69	132
경기	59,368	4,533	3,666	867	751	2,856	42,609	4,398	4,221
강원	10,929	2,843	1,843	1,000	287	622	5,720	744	713
충북	8,846	1,076	1,020	56	160	573	5,786	720	531
충남	12,123	2,378	1,720	658	225	838	7,137	909	636
전북	10,935	1,521	1,334	187	308	747	6,854	913	592
전남	11,350	2,203	1,593	610	405	876	6,241	933	692
경북	15,923	2,541	2,242	299	482	1,186	9,614	1,209	891
경남	19,653	2,916	2,498	418	807	1,210	12,681	1,129	910
제주	5,338	1,469	905	564	153	202	2,903	418	193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이용시설'이 삭제('16. 12. 23. 시행)되어 통계에서 '공중이용시설 현황' 삭제

※ 「위생용품관리법」의 제정('18. 4. 19. 시행)으로 (구)「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던 위생처리업 등의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에서 관련 현황을 삭제

참고 2-2 공중위생영업소 실태보고 조사지침 등

1 공중위생영업소 실태보고 조사지침

1. 조사 목적

공중위생영업소 등의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공중위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43호)

3. 조사내용 및 작성요령

구분	조사내용	작성요령
A	업소수	현재 업소 수 기재
B	지도점검건수	지도점검 건수 기재
C-1	위반건수 계	위반건수 기재
		C-2+3+4+5+6+7+8+9+10+11+12+13+14+15+16+17 을 기재
C-2	미신고	미신고 건수 기재
C-3	시설설비위반	시설·설비 기준 위반건수 기재
C-4	변경 및 지위승계 미신고	변경 및 지위승계 미신고 건수 기재
C-5	위생관리기준 등 위반	위생관리기준 등 위반건수 기재
C-6	불법몰래카메라설치	법 제5조에 따른 불법몰래카메라 설치 적발 건수 기재
C-7	면허규정위반	면허규정 위반건수 기재
C-8	영업소외의업무	영업소 외의 업무 규정 위반건수 기재
C-9	보고및출입검사방해	보고 및 출입검사 방해 규정 위반건수 기재
C-10	개선명령불이행	개선명령 불이행 건수 기재

구분	조사내용	작성요령
C-11	타법 위반으로 통보받은 경우	성매매처벌법·풍속영업규제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통보받은 건수 기재
C-12	영업정지기간중영업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규정 위반건수 기재
C-13	6개월 이상 휴업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건수 기재
C-14	폐업신고(세무서)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수 기재
C-15	위생교육미이수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 기재
C-16	이용사표시등 설치	이용사표시등 설치 규정 위반건수 기재
C-17	위생사명칭 사용	위생사명칭 사용 규정 위반건수 기재
D-1	행정처분건수 계	당분기 행정처분 건수 기재
		D-2+3+4+5+6+7+8 을 기재
D-2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 결과 영업장 폐쇄명령을 한 업소 수를 기재
D-3	영업정지	행정처분 결과 영업정지한 업소 수를 기재
D-4	개선명령	행정처분 결과 개선명령을 한 업소 수를 기재
D-5	경고	행정처분 결과 경고를 한 업소 수를 기재
D-6	면허취소	행정처분 결과 면허취소를 한 사람수를 기재
D-7	면허정지	행정처분 결과 면허정지를 한 사람수를 기재
D-8	과징금 건수	과징금 부과 건수 기재
E	직권말소 건수	직권말소 건수 기재
F	과태료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기재
G-1	고발건수 계	고발 건수 기재
		G-2+3 을 기재
G-2	신고업소	신고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
G-3	미신고 업소	미신고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

4. 조사표

(통계작성요령 구분)		A	B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C-17	D-1	D-2	D-3	D-4	D-5	D-6	D-7	D-8	E	F	G-1	G-2	G-3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고발건수		
기관명	구분	업소수	지도점검건수	계	미신고	시설설비위반	변경 및 지위승계 미신고	위생관리기준 등 위반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면허규정 위반	영업소 외의 업무	보고및 출입검사방해	개선명령 불이행	타법위반으로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6개월 이상 휴업	폐업신고 (세무서)	위생교육 미이수	이용사 표시등 설치	위생사 명칭 사용	계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면허취소	면허정지	과징금 건수	직권말소 건수	과태료 건수	계	신고업소	미신고업소
00시 00구	합계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숙박업(총계)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종합미용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일반미용업, 네일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통계작성요령 구분)		A	B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C-17	D-1	D-2	D-3	D-4	D-5	D-6	D-7	D-8	E	F	G-1	G-2	G-3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고발건수		
기관명	구분	업소수	지도점검건수	계	미신고	시설설비위반	변경 및 지위승계 미신고	위생관리기준 등 위반	불법 물래카메라 설치	면허 규정 위반	영업소 외의 업무	보고및 출입검사방해	개선명령 불이행	타법위반으로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6개월 이상 휴업	폐업 신고 (세무서)	위생교육 미이수	이용사 표시등 설치	위생사 명칭 사용	계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면허취소	면허정지	과징금 건수	직권말소 건수	과태료 건수	계	신고업소	미신고 업소
	일반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피부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일반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미용업(총계)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5. 결과표

□ 연도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단위 : 개소, 0000.12.31기준)

연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계	일반	생활					
···									
···									
···									
···									
0000									

□ 0000년 시·도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단위 : 개소, 0000.12.31기준)

업종별 / 시·도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계	일반	생활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공중위생영업소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0000.12.31기준)

업종별 / 처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계	일반	생활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									

참고 3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

Ⅰ. 관련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중 이·미용업자는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Ⅱ. 가이드라인 개요

1. 개인서비스업자가 옥외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아울러 이·미용업자가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기여한다. 이로 인하여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가이드라인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옥외"라 함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소의 내부공간에 입장하기 전,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소와 관계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나. "가격"이라 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의미한다.
   다. "품목"이라 함은 소비자가 제공받고자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옥외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독립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옥외가격표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한다.

   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업소의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한다.
   나. 도로변에 접해있는 복합건물 1층의 외부업소는 창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표시할 수 있다.
   다. 복합건물의 2, 3층에 위치한 업소는 업소 출입문 주변, 창문에 표시할 수 있다.
   라. 복합건물의 3층 이상의 고층, 또는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는 개별 업소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예: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이동경로 상 벽면 등)에 표시가 가능하다.

3. 옥외가격표시의 디자인·규격은 명시된 기준으로 한다

가. 옥외가격표시 규격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1)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해 시·도 조례 규정)
- 벽면, 유리면의 바깥쪽, 옥상 난간 등에 길게 표시

2) 입간판의 표시방법(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높이 1.2미터, 한 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이고 합계 면적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영업·근무시간 외 또는 기상특보(태풍, 강풍 등)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안으로 이동시켜야 함

3)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해 시·도 조례 규정)
- 건물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
-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함
-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이하에 표시 가능

*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지자체 확인 필요

나.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색상을 사용한다.

4. 업종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용업

1)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이용업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일반미용업

1)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일반미용업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피부미용업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피부상태·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피부미용업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라. 네일미용업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화장·분장미용업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종합미용업

1)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표시방법을 준수하되, 대표적인 품목을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 예시 : 일반미용업의 경우

◦ 커트 : 1만원 ~ 10만원
◦ 염색 : 3만원 ~ 10만원
◦ 펌 : 5만원 ~ 20만원
◦ 두피 스케일링 : 5만원 ~ 20만원
◦ 드라이 : 1만원 ~ 5만원
※ 모발길이나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추가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Ⅳ. 유의 사항

1. 옥외가격표시가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게시판과 조화를 이루어 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옥외가격표시가 소비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옥외가격표시는 가격을 비롯하여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기존 메뉴판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
5. 내부에서 창문 또는 출입문에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옥외에 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참고 4 전국 공중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1. 시·도 공중위생 담당부서 주소록

구 분	부서명	주 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서울특별시청	감염병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4529)	02-2133-7678 (02-768-8853)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47545)	051-888-3377 (051-888-3379)
대구광역시청	위생정책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41911)	053-803-4112 (053-803-4959)
인천광역시청	위생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21554)	032-440-2792~4 (032-440-8658)
광주광역시청	건강위생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61945)	062-613-4363 (062-613-4369)
대전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35242)	042-270-4892 (042-270-4869)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44675)	052-229-3654 (052-229-3659)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16508)	031-8008-3683 (031-8008-3699)
강원특별자치도청	보건식품안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제2별관 4층 (24265)	033-249-2692 (033-249-4038)
충청북도청	식의약안전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번길 별관 (농협 2층) (28526)	043-220-3183 (043-220-3169)
충청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32255)	041-635-4332 (041-635-3063)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염병관리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8층 (54968)	063-280-4671 (063-280-2584)
전라남도청	식품의약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58564)	061-286-5772 (061-286-4736)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36759)	054-880-3842 (054-880-3849)
경상남도청	식품위생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51154)	055-211-5013 (055-211-5019)
제주특별자치도청	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2청사 별관 3층(63122)	064-710-2943 (064-710-2919)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30151)	044-300-2863 (044-300-5719)

2. 서울특별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서울특별시청	감염병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4529)	02-2133-7678 (02-768-8834)
종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03035)	02-2148-3565 (02-2148-5838)
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04611)	02-3396-5643 (02-3396-8892)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04390)	02-2199-8042 (02-2199-5810)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04706)	02-2286-7146 (02-2286-7124)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05026)	02-450-1918 (02-411-1772)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02565)	02-2127-5260 (02-3299-2641)
중랑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02043)	02-2094-0783 (02-2094-4517)
성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02751)	02-2241-6184 (02-2241-6611)
강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01145)	02-901-7626 (02-901-7609)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01395)	02-2091-4463 (02-2091-6280)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01689)	02-2116-4338 (02-2116-4645)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03384)	02-351-8185 (02-351-5681)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03718)	02-330-8901 (02-330-8987)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03937)	02-3153-9188 (02-3153-9199)
양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08095)	02-2620-4892 (02-6948-5569)
강서구 보건소	위생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07560)	02-2600-5830 (02-2620-0502)
구로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08299)	02-860-2059 (02-860-2652)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08611)	02-2627-2637 (02-2627-2101)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07260)	02-2670-4704 (02-2670-4875)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06963)	02-820-9414 (02-820-1655)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08832)	02-879-7284 (02-879-7853)
서초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06750)	02-2155-8045 (02-2155-8386)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06088)	02-3423-7082 (02-3423-8901)
송파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05552)	02-2147-3459 (02-2147-3895)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05397)	02-3425-6632 (02-3425-7268)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148-3562 (02-2148-5838)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02-3153-9912 (02-3153-8497)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3396-5646 (02-3396-8892)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02-2620-3126 (02-6948-5554)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02-2199-6547 (02-2199-5560)	강서구청	민원여권과	02-2600-6148 (02-2620-0423)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02-2286-6492 (02-2286-5908)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860-2267 (02-860-2630)
광진구보건소	민원여권과	02-450-7179 (02-450-1713)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02-2627-1146 (02-2251-1790)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02-2127-4454 (02-3299-2617)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670-3912 02-2670-4734 (02-2670-4882)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02-2094-0642 (02-490-4350)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820-9409 (02-820-1655)
성북구청	민원여관과	02-2241-4517 (02-2241-6595)	관악구청	민원여권과	02-879-5314 (02-879-7813)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02-901-6266 (02-901-5515)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02-2155-6322 (02-2155-6363)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091-4412 (02-2091-6279)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02-3423-5379 (02-3423-8860)
노원구보건소	민원여권과	02-2116-3254 (02-2116-4614)	송파구청	민원행정과	02-2147-5095~7 (02-2147-3859)
은평구청	민원여권과	02-351-6414 (02-351-5626)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3425-6633 (02-3425-8603)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02-330-1435 (02-330-1684)			

3. 부산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47545)	051-888-3377 (051-888-3379)
중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48926)	051-600-4401~3 (051-600-4389)
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49247)	051-240-4401/4412 (051-240-4389)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48781)	051-440-4411~5 (051-440-4389)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49011)	051-419-4401~5 051-419-4411~5 (051-419-4729)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47193)	051-605-4401~7 (051-605-4389)
동래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47885)	051-550-4401~6/4411~6 (051-550-4389)
남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48452)	051-607-4401~3 (051-607-4389)
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46504)	051-309-4411~4 (051-309-4389)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48049)	051-749-4441~3, 4445 (051-749-4389)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49328)	051-220-4401~4 (051-220-4389)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46274)	051-519-4411~4 (051-519-4389)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46702)	051-970-4426, 2665 (051-970-4389)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47605)	051-665-4405~6, 4414 (051-665-4389)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48305)	051-610-4401~5/4411~6 (051-610-4409)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46985)	051-310-4401~4/4411~5 (051-310-4389)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46077)	051-709-4411~6 (051-709-4389)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중구청	민원봉사과	051-600-4267 (051-600-4269)	해운대구	민원여권과	051-749-5672 (051-749-4269)
서구청	민원봉사과	051-240-4266 (051-240-4269)	사하구청	민원여권과	051-220-4821 (051-220-4269)
동구청	민원여권과	051-440-4291 (051-440-4988)	금정구청	민원여권과	051-519-4265 (051-519-4269)
영도구청	민원회계과	051-419-4275 (051-419-4289)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051-970-4427 (051-970-4389)
부산진구청	민원여권과	051-605-4884 (051-605-4649)	연제구청	민원여권과	051-665-4268 (051-665-4269)
동래구청	민원여권과	051-550-4264 (051-550-4269)	수영구청	민원여권과	051-610-4266 (051-610-4269)
남구청	민원여권과	051-607-4264 (051-607-4269)	사상구청	민원여권과	051-310-4266 (051-310-4269)
북구청	민원봉사과	051-309-4265 (051-309-4267)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051-709-4411~5 (051-709-4389)

4. 대구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대구광역시청	위생정책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41911)	053-803-4112 (053-803-4959)
중구 보건소	위생과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41901)	053-661-2754 (053-661-2759)
동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0(41167)	053-662-2753 (053-662-2759)
서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41777)	053-663-2754 (053-663-2759)
남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42429)	053-664-2752 (053-664-2759)
북구 보건소	위생과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41550)	053-665-2752 (053-665-0366)
수성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42152)	053-666-2752 (053-666-2759)
달서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42731)	053-667-2752 (053-667-2759)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42974)	053-668-2752 (053-282-7376)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43113)	054-380-7959 (054-380-6145)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중구 보건소	위생과	053-661-3191 (053-661-2759)	수성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053-666-2758 (053-666-2759)
동구청	위생과	053-662-2979, 2980 (053-662-2759)	달서구청	위생과	053-667-2344 (053-667-2759)
서구청	위생과	053-663-2346 (053-663-2759)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053-668-2764 (053-282-7376)
남구청	위생과	053-664-2356 (053-664-2759)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054-380-7959 (054-380-6145)
북구 보건소	위생과	053-665-2757 (053-665-2759)			

5. 인천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인천광역시청	위생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21554)	032-440-2792~4 (032-440-8658)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23031)	032-930-3535 (032-930-3636)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22193)	032-899-3164 (032-899-3149)
중구청	위생환경과 (위생지도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22315)	032-760-7351~4 (032-760-6469)
	친환경위생과 (공중위생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100, 영종제2청사(22372)	032-760-7791~3 (032-760-6997)
동구청	환경위생과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22556)	032-770-6524/6534 (032-770-6509)
미추홀구 보건소	위생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22169)	032-880-5712~3 (032-880-5749)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송도동 이외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21967)	032-749-7961~3 (032-749-7959)
	송도정책과 (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구단지로14(21984)	032-749-8445~9 (032-749-8289)
남동구청	식품위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21589)	032-453-2633~4 (032-453-2759)
부평구청	위생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21354)	032-509-6820 (032-509-7670)
계양구청	위생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21067)	032-450-5432~4 (032-551-5744)
서구청	식품위생과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22726)	032-560-3252~3 (032-560-2756)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032-930-3833 (032-930-3636)	연수구청	민원여권과	032-749-7557 (032-749-7548)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99-3162 (032-899-3149)	남동구청	식품위생과	032-453-2634 (032-453-2759)
중구청	위생환경과	032-760-7348 (032-760-6469)	부평구청	위생과	032-509-6825 (032-509-7670)
	친환경위생과	032-760-7793 (032-760-6997)	계양구청	위생과	032-450-5423 (032-551-5744)
동구청	환경위생과	032-770-6524 (032-770-6509)	서구청	식품위생과	032-560-3252~3 (032-560-2756)
미추홀구 보건소	위생과	032-880-5712~3 (032-880-5749)			

6. 광주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광주광역시청	건강위생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61945)	062-613-4363 (062-613-4369)
동구청	위생과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61466)	062-608-2452 (062-608-2499)
서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61928)	062-360-7975 (062-360-7558)
남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61687)	062-607-4441 (062-607-4405)
북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138번길 11(61217)	062-410-6696 (062-510-1452)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62430)	062-960-8479 (062-960-3739)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동구청	위생과	062-608-3357 (062-608-2499)	북구청	보건위생과	062-410-6279 (062-510-1245)
서구청	보건위생과	062-360-7973 (062-360-7558)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062-960-8479 (062-960-3739)
남구청	보건위생과	062-607-4418 (062-607-4405)			

7. 대전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대전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35242)	042-270-4892 (042-270-4869)
동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34691)	042-251-4656 (042-224-6163)
중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34939)	042-606-7322 (042-606-7923)
서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35238)	042-288-3322 (042-288-5917)
유성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34139)	042-611-2422 (042-611-2431)
대덕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34443)	042-608-6882 (042-608-3835)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동구청	위생과	042-251-4654 (042-224-6157)	유성구청	위생과	042-611-2419 (042-611-2431)
중구청	민원여권과	042-606-6106 (042-606-7923)	대덕구청	위생과	042-608-6883 (042-608-3835)
서구청	위생과	042-288-2106 (042-288-5917)			

8. 울산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44675)	052-229-3654 (052-229-3659)
중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44475)	052-290-3731~6 (052-290-3709)
남구청	위생과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44701)	052-226-5723~5 (052-226-5729)
동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44021)	052-209-3571~5 (052-209-3549)
북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44248)	052-241-7782~5 (052-241-7769)
울주군청	자원위생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44959)	052-204-2211~4 (052-204-2219)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중구청	환경위생과	052-290-3730 (052-290-3709)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41-7785 (052-241-7769)
남구청	위생과	052-226-5724 (052-226-5729)	울주군청	자원위생과	052-204-2214 (052-204-2219)
동구청	환경위생과	052-209-3575 (052-209-3549)			

9. 경기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16508)	031-8008-3683 (031-8008-3699)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16490)	031-228-2227 (031-228-2396)
수원시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16295)	031-228-5325 (031-228-5595)
수원시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16626)	031-228-6324 (031-228-6595)
수원시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16255)	031-228-7394 (031-228-7595)
수원시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16545)	031-228-8923 (031-369-4806)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10460)	031-8075-3423 (031-8075-4919)
고양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10497)	031-8075-5272~5 (031-8075-9824)
고양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10409)	031-8075-6272~5 (031-8075-9887)
고양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10226)	031-8075-7272~5 (031-8075-9949)
용인시청	위생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17019)	031-6193-2231 (031-6193-2139)
용인시 처인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17049)	031-6193-5304 (031-6193-5349)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16963)	031-6193-6301 (031-6193-6362)
용인시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16835)	031-6193-8301 (031-6193-8419)
성남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13437)	031-729-3132 (031-729-3109)
성남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13259)	031-729-5314 (031-729-5525)
성남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13371)	031-729-6313 (031-729-6525)
성남시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13594)	031-729-7312 (031-729-7525)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14547)	032-625-4328 (032-625-430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부천시 원미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14566)	032-625-5351 (032-625-5329)
부천시 소사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경인옛로 73(14692)	032-625-6341 (032-625-6359)
부천시 오정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14434)	032-625-7341 (032-625-7359)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15396)	031-481-3976 (031-481-3198)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15585)	031-481-5235 (031-481-5575)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15396)	031-481-6237 (031-481-6575)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18274)	031-5189-3045 (031-5189-1613)
화성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23(18401)	031-5189-4166 (031-5189-4917)
화성시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2(18478)	031-5189-5312 (031-5189-5683)
남양주시청	위생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12232)	031-590-3973 (031-590-2239)
안양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14053)	031-8045-5643 (031-8045-6519)
안양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14034)	031-8045-3313 (031-8045-6605)
안양시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14047)	031-8045-4324 (031-8045-6655)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17901)	031-8024-3883 (031-8024-3858)
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17730)	031-8024-6353 (031-8024-6329)
평택시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17816)	031-8024-8282 (031-8024-8259)
의정부시보건소	위생과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별관1층 (11622)	031-828-2934 (031-828-2939)
파주시청	위생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10932)	031-940-8532 (031-940-4439)
시흥시보건소	위생과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5(14904)	031-310-2232 (031-310-2821)
김포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1층(10109)	031-980-2209 (031-980-222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광명시청	위생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14234)	02-2680-6445 (02-2680-2623)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12738)	031-760-4723 (031-760-1457)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15829)	031-390-0851 (031-390-0259)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17353)	031-645-3466 (031-634-4000)
오산시보건소	식품위생과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18132)	031-8036-6838 (031-8036-8966)
하남시청	식품위생 농업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12951)	031-790-6231 (031-790-6319)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11498)	031-8082-5283 (0505-041-0246)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11954)	031-550-2231 (031-550-2600)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17596)	031-678-5734 (031-678-5708)
포천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11147)	031-538-3684 (031-538-3685)
의왕시청	지역경제 위생과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16075)	031-345-2822 (031-345-2359)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12628)	031-887-3612 (031-887-3610)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12546)	031-770-3831 (031-770-3537)
동두천시청	농업축산 위생과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11317)	031-860-2234 (031-860-2667)
과천시청	자원위생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13806)	02-3677-2233 (02-2150-1531)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12417)	031-580-2231 (031-580-2239)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11017)	031-839-2233 (031-839-2670)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031-228-3575 (031-369-2014)	의정부시 보건소	위생과	031-828-2934 (031-828-2939)
용인시 처인구	환경위생과	031-324-5304~5,7 (031-324-5349)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031-760-4723 (031-760-1457)
용인시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301,4,6 (031-324-6362)	광명시청	위생과	02-2680-2231 (02-2680-2778)
용인시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24-8301,3,4 (031-324-8419)	하남시청	식품위생농업과	031-790-5697 (031-790-6319)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031-8075-3309~11 (031-8075-4919)	군포시청	위생지원과	031-390-0038 (031-390-0259)
성남시청	위생정책과	031-729-3104 (031-729-3109)	오산시청	식품위생과	031-8036-6834 (031-8036-8966)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031-5189-2239 (031-5189-1613)	양주시 보건소	위생과	031-8082-5291 (0505-041-1702)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032-625-4313 (032-625-4309)	이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31-645-3466 (031-634-4000)
남양주시청	위생과	031-590-8904 (031-590-2339)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031-550-2231 (031-550-2600)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031-481-3976~7 (031-481-3198)	안성보건소	보건위생과	031-678-5734 (031-678-5708)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031-8024-3882 (031-8024-3858)	의왕시청	지역경제 위생과	031-345-2824 (031-345-2359)
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031-8024-6353 (031-8024-6329)	포천시청	식품위생과	031-538-3684, 3706 (031-538-3685)
평택시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031-8024-8282 (031-8024-8259)	양평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770-2628 (031-770-3537)
안양시 만안구	환경위생과	031-8045-3323 (031-8045-6605)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031-887-2654 (031-887-3610)
안양시 동안구	환경위생과	031-8045-4313 (031-8045-6655)	동두천시청	농업축산 위생과	031-860-2234 (031-860-2667)
시흥시청	위생과	031-310-2238 (031-380-5368)	과천시청	자원위생과	02-3677-2231 (02-2150-1531)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031-980-2209 (031-980-2229)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031-580-2409 (031-580-2239)
파주시청	위생과	031-940-8531~6 (031-940-4439)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031-839-2233 (031-839-2670)

10. 강원특별자치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강원특별자치도청	보건식품안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제2별관 4층 (24265)	033-249-2692 (033-249-4038)
춘천시보건소	위생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35(24358)	033-250-4505 (033-256-4010)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139(26417)	033-737-4048 (033-737-4827)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25604)	033-660-3020 (033-660-3025)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00-2 (25755)	033-530-2413 (033-530-2734)
태백시청	민원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26023)	033-550-3015 (033-550-2921)
속초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복로 36(24855)	033-639-2241 (033-632-1814)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76(25929)	033-570-3325 (033-570-4170)
홍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신장대로 5(25135)	033-430-2656 (033-430-4019)
횡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25234)	033-340-5693 (033-340-5608)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26235)	033-370-2391 (033-370-2344)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25374)	033-330-4925 (033-330-4809)
정선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26127)	033-560-2040 (033-563-4000)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24037)	033-450-5312 (033-450-5178)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24125)	033-440-2843 (033-440-2590)
양구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24522)	033-480-2721/2722 (033-480-2719)
인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24633)	033-460-2514 (033-460-2275)
고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24736)	033-680-3952 (033-680-3549)
양양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25031)	033-670-2509 (033-670-2558)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춘천시보건소	위생과	033-250-4507 (033-256-4010)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033-370-2391 (033-370-2344)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033-737-4034,4039 (033-737-4827)	평창군보건 의료원	보건정책과	033-330-4926 (033-330-4809)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033-660-3021~2 (033-660-3025)	정선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560-2747 (033-563-4000)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033-530-2413 (033-530-2734)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450-5312 (033-450-5178)
태백시청	민원과	033-550-3015 (033-550-2921)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033-440-2843 (033-440-2590)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33-639-2499 (033-632-1814)	양구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480-2721 (033-480-2719)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033-570-3324 (033-570-4170)	인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460-2768 (033-460-2275)
홍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033-430-2654 (033-430-4019)	고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680-3952 (033-680-3549)
횡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033-340-5693 (033-340-5608)	양양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670-2509 (033-670-2558)

11. 충청북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충청북도청	식의약안전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번길 별관 (농협 2층) (28526)	043-220-3183 (043-220-3169)
청주시청	위생정책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28501)	043-201-1964 (043-201-1989)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28806)	043-201-5312 (043-201-5349)
청주시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28565)	043-201-6314 (043-201-6349)
청주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71(28369)	043-201-7314 (043-201-7349)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28488)	043-201-8312 (043-201-8349)
충주시청	위생과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27339)	043-850-3464 (043-850-3408)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27152)	043-641-3190 (043-641-3139)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28943)	043-540-3274 (043-543-2595)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29032)	043-730-3424 (043-731-1986)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29140)	043-740-3794 (043-740-3759)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27927)	043-835-3634 (043-835-3609)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27832)	043-539-3422 (0502-1192-0037)
괴산군청	농식품유통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28026)	043-830-3474 (043-830-3729)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27690)	043-871-3832 (043-871-1926)
단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27013)	043-420-3234 (043-420-3259)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청주시청	위생정책과	043-201-1972 (043-201-1989)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043-835-3634 (043-835-3609)
충주시청	위생과	043-850-3463 (043-850-3408)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043-539-3422 (0502-1192-0037)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43-641-3183 (043-641-3039)	괴산군청	농식품유통과	043-830-3474 (043-830-3729)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043-540-3274 (043-543-2595)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043-871-3835 (043-871-1926)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3424 (043-731-1986)	단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43-420-3234 (043-420-3259)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043-740-3794 (043-740-3759)			

12. 충청남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충청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32255)	041-635-4332 (041-635-3063)
천안시청	식품안전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31162)	041-521-5444 (041-521-2359)
천안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31131)	041-521-4333 (041-521-4229)
천안시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75(31049)	041-521-6335 (041-521-6229)
공주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3, 교동(32542)	041-840-3227 (041-840-3741)
보령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33493)	041-930-5938 (041-930-5909)
아산시청	위생과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31512)	041-540-2109 (041-540-2456)
서산시 보건소	정신보건위생과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6로 6(31997)	041-661-8197 (041-661-6599)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82(32993)	041-746-8146 (041-746-8019)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32823)	042-840-2464 (042-840-2459)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31773)	041-360-6652~4 (041-360-6599)
금산군청	환경위생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32733)	041-750-2534 (041-751-6291)
부여군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33140)	041-830-8633 (041-830-8700)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19(33637)	041-950-4312 (041-950-4545)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33323)	041-940-2184 (041-940-2510)
홍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32236)	041-630-9016 (041-630-9860)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충청남도 예산읍 군청로 22(32435)	041-339-7484 (041-339-7459)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041-671-5477 (041-675-4105)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천안시청	식품안전과	041-521-5514 (041-521-2359)	금산군청	환경위생과	041-750-2534 (041-751-6291)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041-840-3233 (041-840-3741)	부여군 보건소	보건위생과	041-830-8633 (041-830-8700)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41-930-5903 (041-930-5909)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041-950-4312 (041-950-4545)
아산시청	위생과	041-540-2109, 041-537-3488 (041-540-2456)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041-940-2184 (041-940-2510)
서산시보건소	정신보건위생과	041-661-6537 (041-661-6599)	홍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41-630-9016 (041-630-9860)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41-746-6668 (041-746-8029)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041-339-7484 (041-339-7459)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042-840-2464 (042-840-2459)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	041-671-5479 (041-675-4105)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041-360-6652~4 (041-360-6599)			

13. 전북특별자치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염병관리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8층 (54968)	063-280-4671 (063-280-2584)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8층 (54995)	063-281-2371 (063-281-2613)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55051)	063-220-5327 (063-220-5447)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1층 (54937)	063-270-6325 (063-279-6909)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18, 1층 (54078)	063-454-3412 063-454-3415 (063-454-6023)
익산시청	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9층 (54622)	063-859-5455 (063-859-5083)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1로 61, 3층 (56179)	063-539-6092 (063-539-6531)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1285 (55766)	063-620-7995 (063-631-5931)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산길 138, 2층 보건위생과 (54385)	063-540-1385 (063-540-1358)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5352)	063-290-2702 (063-290-2060)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55422)	063-430-2313 (063-430-2706)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55517)	063-320-2327 (063-320-2489)
장수군청	축산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55634)	063-350-2541 (063-350-5715)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4층(55927)	063-640-3163 (063-640-2369)
순창군청	환경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천로 33, 순창군청 3층 환경위생과 (56039)	063-650-1744 (063-650-1729)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5, 2층 환경위생과 (56433)	063-560-2865 (063-560-2869)
부안군청	관광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7, 4층(56305)	063-580-4379 (063-580-4350)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063-220-5327 (063-220-5447)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063-430-2313 (063-430-2706)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063-270-6419 (063-279-6909)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063-320-2329 (063-320-2489)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063-454-3415 (063-454-6023)	장수군청	축산위생과	063-350-2541 (063-350-5715)
익산시청	위생과	063-859-5786 (063-859-5083)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063-640-3163 (063-640-2369)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3-539-6092 (063-539-6531)	순창군청	환경위생과	063-650-1744 (063-650-1729)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063-620-7995 (063-631-5931)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063-560-2865 (063-560-2869)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3-540-1385 (063-540-1358)	부안군청	관광과	063-580-4379 (063-580-4350)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063-290-2702 (063-290-2060)			

14. 전라남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전라남도청	식품의약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58564)	061-286-5772 (061-286-4736)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58714)	061-270-8945 (061-270-3597)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4길 47(59674)	061-659-4386 (061-659-5842)
순천시청 순천시보건소	관광과(숙박업) 식품위생과(이·미용 등)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32(57938)	061-749-5805 061-749-6837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라남도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58274)	061-339-2151 (061-339-2833)
광양시보건소	식품위생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57785)	061-797-4020 (061-797-4158)
담양군청	관광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57339)	061-380-3166 (061-380-3557)
곡성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57542)	061-360-8941 (061-360-8909)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57656)	061-780-2326 (061-780-2577)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59542)	061-830-5798 (061-830-5577)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165(59455)	061-850-5321 (061-850-8505)
화순군청	관광체육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58112)	061-379-3493 (061-379-3540)
장흥군보건소	질병관리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59327)	061-860-6453 (061-860-6880)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59228)	061-430-3192 (061-430-3359)
해남군청	관광실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59028)	061-530-5979 (061-530-5577)
영암군청	관광스포츠과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58415)	061-470-2323 (061-470-2577)
무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28(58528)	061-450-4687 (061-450-5134)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57153)	061-320-2455 (061-320-3527)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70(57035)	061-350-4930 (061-350-5360)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장성군청	관광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57219)	061-390-7342 (061-390-7577)
완도군청	관광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59124)	061-550-5444 (061-550-5409)
진도군청	관광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58915)	061-540-3413 (061-540-3448)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58827)	061-240-8437 (061-240-8580)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270-3543 (061-270-8312)	장흥군보건소	질병관리과	061-860-6453 (061-860-6880)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061-659-3374 061-659-3378 (061-659-5842)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061-430-3425 (061-430-3429)
순천시보건소	식품위생과	061-749-5511 (061-749-4788)	해남군청	건축허가과	061-530-5363 (061-530-5593)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1-339-2176~7 (061-339-2833)	영암군청	민원소통과	061-470-2413 (061-470-2576)
광양시보건소	식품위생과	061-797-3456 (061-797-4158)	무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61-450-4687 (061-450-5134)
담양군청	관광과	061-380-3168 (061-380-3557)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20-2457 (061-320-3527)
곡성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61-360-8941 (061-360-8909)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061-350-5829 (061-350-5597)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061-780-2326 (061-780-2577)	장성군청	관광과	061-390-7314 (061-390-7577)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061-830-5276 (061-830-5577)	완도군청	관광과	061-550-5443 (061-550-5409)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321 (061-850-8505)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40-3613 (061-540-3693)
화순군청	관광체육실	061-379-3492 (061-379-3540)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061-240-8272 (061-240-8577)

15. 경상북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36759)	054-880-3842 (054-880-3849)
포항시청	식품위생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37683)	054-270-3874 (054-270-3549)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37832)	054-270-6182 (054-270-6513)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36(37722)	054-240-7182 (054-240-7513)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38102)	054-779-8588 (054-760-7486)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39532)	054-421-2724 (054-420-6189)
안동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65(36694)	054-840-5886 (054-840-5919)
구미시청	위생과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39281)	054-480-5492 (054-480-5499)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번길 19(36132)	054-639-6693 (054-639-1411)
영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상북도 영천시 옛군청1길 31(38849)	054-339-7997 (054-330-6439)
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37183)	054-537-5134 (054-532-4000)
문경시청	식품위생과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36982)	054-550-6028 (054-550-6029)
경산시 보건소	식품의약과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8(38616)	053-810-6341 (053-811-7441)
의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37343)	054-830-6243 (054-833-0680)
청송군청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37427)	054-870-6172 (054-870-6269)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36357)	054-680-6792 (054-680-6789)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36429)	054-730-6174 (054-730-6189)
청도군청	평생보장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38330)	054-370-2172 (054-370-6169)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054-950-6694 (054-950-667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성주군 보건소	식품공중위생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40023)	054-930-6725 (054-933-5961)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39888)	054-979-6675 (054-979-6679)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36826)	054-650-6171 (054-650-6780)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36239)	054-679-6193 (054-679-6179)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36323)	054-789-6693 (054-789-3266)
울릉군청	환경위생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40222)	054-790-6173 (054-790-6189)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포항시	총무새마을과	054-270-2126 (054-270-5998)	청송군	관광정책과	054-870-6172 (054-870-6269)
경주시	식품위생산업과	054-779-8588 (054-760-7486)	영양군	종합민원과	054-680-6792 (054-680-6789)
김천시	환경위생과	054-420-2774 (054-420-6189)	영덕군	환경위생과	054-730-6173 (054-730-6189)
안동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840-5886 (054-840-5919)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172 (054-370-6169)
구미시	민원봉사과	054-480-5641 (054-480-2809)	고령군	관광진흥과	054-950-6694 (054-950-6679)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639-6693 (054-639-1411)	성주군 보건소	식품공중위생팀	054-930-6725 (054-933-5961)
영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339-7993 (054-330-6439)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054-979-6672~3 (054-979-6679)
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537-5135 (054-532-4000)	예천군	종합민원과	054-650-8062 (054-650-6780)
문경시	식품위생과	054-550-6197 (054-550-6029)	봉화군	종합민원실	054-550-6028 (054-679-6179)
경산시청	허가과	053-810-5703,5 (053-810-6209)	울진군	환경위생과	054-789-6693 (054-789-3266)
의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054-830-6243 (054-833-0680)	울릉군	환경위생과	054-790-6173 (054-790-6189)

16. 경상남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경상남도청	식품위생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51154)	055-211-5013 (055-211-5019)
창원시청	보건위생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51435)	055-225-3624 (055-225-4757)
창원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51381)	055-212-4551 (055-225-4838)
창원시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51539)	055-272-4551 (055-225-4868)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51736)	055-220-4551 (055-225-4898)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51323)	055-230-4551 (055-225-4928)
창원시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51629)	055-548-4551 (055-225-4958)
진주시청	위생과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52789)	055-749-8684 (055-749-5789)
통영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4길 108(53038)	055-650-6030 (055-650-6199)
사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52539)	055-831-3611 (055-831-6041)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27(50958)	055-330-4471 (055-328-6239)
김해시 서부보건소	위생과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149(50981)	055-330-8681
밀양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 41(50437)	055-359-7094 (055-359-7095)
거제시청	위생과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53257)	055-639-3995 (055-639-3979)
양산시청	위생과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50624)	055-392-5206 (055-392-5199)
양산시 웅상출장소	허가과	경상남도 양산시 진등길 40(50519)	055-392-6195 (055-392-6249)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52140)	055-570-2634 (055-570-2639)
함안군청	종합민원과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52043)	055-580-2345 (055-580-2238)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50317)	055-530-1164 (055-530-1610)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52943)	055-670-2735 (055-670-2159)
남해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52413)	055-860-8744 (055-860-8799)
하동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2층(52333)	055-880-2355 (055-880-6620)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52221)	055-970-7154 (055-970-7109)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50036)	055-960-6164 (055-960-5764)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50132)	055-940-3336 (055-940-3288)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50231)	055-930-3318 (055-930-3299)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창원시 의창구	문화위생과	055-212-4555 (055-225-4838)	양산시	위생과	055-392-5283~4 (055-392-5199)
창원시 성산구	문화위생과	055-272-4556 (055-225-4868)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2634 (055-570-2639)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055-220-4555 (055-225-4898)	함안군	종합민원과	055-580-2345 (055-580-2238)
창원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055-230-4555 (055-225-4928)	창녕군	환경위생과	055-530-1164 (055-530-1610)
창원시 진해구	문화위생과	055-548-4555 (055-225-4958)	고성군	열린민원과	055-670-2735 (055-670-2159)
진주시	위생과	055-749-8344~5 (055-749-5789)	남해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055-860-8744 (055-860-8799)
통영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5-650-6024 (055-650-6199)	하동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055-880-2356 (055-880-6620)
사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5-831-3612 (055-831-6041)	산청군	환경위생과	055-970-7154 (055-970-7109)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055-330-4461 (055-328-6239)	함양군	환경위생과	055-960-6164 (055-960-5764)
김해시 서부보건소	위생과	055-330-8671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335 (055-940-3288)
밀양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5-359-7094 (055-359-7095)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335 (055-940-3288)

17. 제주특별자치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제주특별자치도청	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2청사 별관 3층(63122)	064-710-2943 (064-710-2919)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63208)	064-728-2613 (064-728-2619)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63584)	064-760-6502 (064-760-2429)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064-728-2614 (064-728-2619)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064-760-6503 (064-760-2429)

18. 세종특별자치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30151)	044-300-2863 (044-300-5719)
조치원읍 행복복지센터	안전도시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30024)	044-301-5177 (044-301-5179)
아름동 행복복지센터	안전도시과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14(30100)	044-301-6394 (044-301-6349)

[이·미용사 면허발급 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Fax)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정책과	044-300-2863 (044-300-5719	아름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 안전도시팀	044-301-6398 (044-301-6349)
조치원 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 안전도시팀	044-301-5177 (044-301-5179)			

참고 5 위생교육 실시지침 및 관련서식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말한다.
2. "영업자"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교육대상자"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4. "교육불참자"라 함은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수료증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 실시단체) ①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서 실시한다.

제4조(교육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실시단체(이하 "교육실시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교육실시단체가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교육목적 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단체 지정취소, 타업종 실시단체에서 교육시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공중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이하 "공중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 시 해당 내용을 교육실시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 수강 일에 교육실시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신고 수리 시 신고관청은 신고관리대장(「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내용 등) ① 교육실시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공중위생관리법령의 해설과 운용 등)
2. 공중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관련 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4. 소양교육(소비자 분쟁조정,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개선 및 청결에 관한 사항 등)
5. 기술교육
6. 기타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 및 교육장 내 상품 홍보·판매, 교육교재에 광고 포함 등 교육과 관련 없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시간은 3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온라인교육의 경우 강의영상 재생시간이 3시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교육은 연간 6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교육대상 규모를 감안하여 교육기간을 축소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제6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교재는 피교육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수료예상인원
2. 교육운영기간, 교육일시 및 장소
3. 강사 확보 계획
4. 교육내용(집합 및 온라인) 및 교육교재
5. 수강료 및 산출내역
6.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7. 과목별 교육시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시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위생교육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결과보고 시 변동사항 및 그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9조(인력) ① 교육실시단체 내에 상근하는 교육 전담 관리자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연간 교육계획 마련, 교육실시결과 작성, 보고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
2.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관리와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육교재와 관련한 사항
4. 강사 확보 및 교육실시방법과 관련한 계획(대상별·지역별 및 집합·온라인별)
5. 수입·지출 등 위생교육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교육만족도 조사 등 교육현황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항 등

② 강사는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공중위생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이 위생교육 강사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양한다.

제10조(교육장소 등) ①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써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장소에는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강의실, 화장실(남여 구별이 되어야 한다) 등이 있어야 한다.
2.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좌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3. 강의실에는 컴퓨터 및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이외에 온라인교육·우편교육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에 한한다.

제11조(수강료 등)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인원, 강사 수당, 교육 교재편찬비(인쇄비),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피교육자로부터 실비 수준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교육실시단체 소속 회원 및 비회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없다.

③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회 또는 지부 등에서 일부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중앙회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회계와의 전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외에, 지출 및 회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체별 「위생교육 회계·집행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12조(수강료 등 공개)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당해연도 교육이 종료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개시기, 공개매체, 공개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실시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통지서 송부)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연간 교육운영기간,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6. 우편·집합·인터넷교육에 관한 사항

제14조(신규영업자교육)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동일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교육의 연기) ① 신규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의 각호 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생교육 미필 사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사망 시
3. 법령이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교육실시단체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영업자교육은 영업자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만족도 조사 등)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의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강의내용이나 교수방법상 불만족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교육실시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를 받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해당 교육실시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실시 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강사 참여,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서 공중위생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참석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 내에 물품판매 등 교육취지를 저해하는 행위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대상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단체의 장이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신고관청은 통보 받을 때마다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 수료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실시 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교육실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교육이 모두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결과보고 등) ① 교육실시단체장은 당해연도의 교육실시결과보고서를 시·도별로 구분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교육실시결과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단체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강의교재, 질의응답내용 등)를 즉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실시단체장에게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

신고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				
영업장	영업장명					
	소 재 지	(전화)				
	영업개시일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지 정 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공중위생교육실시단체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육 통지서

제 호

업 소 명		성 명	
영업소재지			
생년 월일		성 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025년도에 실시하는 제 차 위생 교육을 통지하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교육 불참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집 합 교 육	일시 및 장소 :
인 터 넷 강 의	운영기간 :
	사이트 주소 :

년 월 일

공중위생교육실시단체장 ㊞

제 호

교육 통지서 수령증

업 소 명 :
영업소재지 :
성 명 :
교 육 일 시 :

위 사람에 대한 위생교육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일시 :
수 령 인 : ㊞)
본인과의 관계 ( )

[별지 제3호 서식]

위생교육미필사유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영업소	상 호					
	소재지					
	업 종					

연 기 사 유

년 월 일

제출자 ㊞

시·군·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생 교 육 수 료 증

제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주　　소 :

업 소 명 :

영 업 소 재 지 :

귀하는「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차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공중위생교육 실시단체장　　㊞

[별지 제5호 서식]

위생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시·군·구청 제출용)

1.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총괄표

①교육대상자	②교육계획 인원(명)	③교육수료인원(명)		
		온라인	집합	계
총계				
000 신규				
000 기존				

2. 회차별 위생교육 결과

구 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계획인원(명)	수료인원(명)	비 고
1차					
2차					
3차					
계					

3. 교육수료자 명단

일련 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수료일자	교육수료자명 (공중위생관리책임자의 경우)
1						
2						
3						
4						
5						

* 필요시 별도첨부 가능

4. 기타 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위생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보건복지부 제출용)

1.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총괄표

①교육대상자	②교육계획 인원(명)	③교육수료인원(명)			④교육비 수지결산(천원)		
		온라인	집합	계	수입	지출	이월
총계							
000 신규							
000 기존							

2. 교육비수지결산 세부내역 총괄표

① 수 입				② 지 출			
수입내역	금액(천원)			지출내역	금액(천원)		
	계획	실수입	증감액		계획	실집행	증감액
전년도 이월금				교육장 임차료			
신규교육				인건비			
…				…			
계				계			

2-1. 주요 변경 사유

○ 수입

○ 지출

3. 시도지회별 위생교육 결과

지역	교육횟수	교육실시 인원(명)	수입액(천원)	지출액(천원)	이월등
계					
서울					
부산 … …					
제주					

4. 교육실시 총평, 교육방법, 교육과목 및 내용 등 간략하게 기술

○ 교육실시 총평

○ 교육방법

○ 교육과목 및 내용

[별지 제7호 서식]

위생교육대상자 명단 서식

담당 : 000구 00과 000 주무관 (연락처 : 000-000-0000)

연번	영업소				교육대상자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참고 6 위생교육 실시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1	(사)대한숙박업 중앙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7 경오빌딩 4층(07366)	02-2631-9868~9 (02-2676-6601)	kwan9868 @naver.com
2	(사)한국목욕업 중앙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리버타워오피스텔 703호(07248)	02-2679-0333 (02-2679-0335)	mokgoks @naver.com
3	(사)한국이용사회 중앙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2 비에스타워빌딩 12층(04100)	02-715-2804 (02-715-2803)	kbca2803 @hanmail.net
4	(사)대한미용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23 미용회관 5층(06682)	02-585-3351 (02-588-5012)	g020202 @hanmail.net
5	(사)한국세탁업 중앙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8, 608호 (가산동, 고려테크온)(07422)	02-812-1142 (02-821-4535)	dryking @daum.net
6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경협회관 602호(04783)	02-465-5900 (02-465-5244)	kabm @kabm.org
7	(사)한국피부 미용사회중앙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60(서강빌딩) 5층 (04098)	02-586-7342~4 (02-523-9603)	info @kocea.org
8	(사)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0길 13 201호 (신사동 597-4, 명진빌딩)(06025)	02-515-1485 (02-515-1486)	kmakeup @kmakeup.or.kr
9	(사)대한네일 미용사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9, 301호 (연희동, 범우빌딩)	02-546-9755 (02-546-9754)	hsson @knta.org

참고 7 업종별 행정처분기준

1. 숙박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영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1)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3)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8호				
1)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5)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6)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영업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3호	영업장 폐쇄명령			

2. 목욕장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1)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목욕물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장 폐쇄명령
2)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가)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나)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다)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라)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목욕실 및 탈의실내에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바)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종사자를 둔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 보조자를 둔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아)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자)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차)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카)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 종류의 표시 외에 다른 업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8호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		영업정지	영업장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3월	폐쇄명령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영업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3호	영업장 폐쇄명령			

3. 이용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가) 이용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그 밖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3) 별표 4 제3호사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면허정지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면허취소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8호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가)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이용사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영업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3호	영업장 폐쇄명령			

4. 미용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4)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5) 별표 4 제4호자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면허정지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면허취소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8호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가)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미용사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3)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영업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3호	영업장 폐쇄명령			

5. 세탁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재·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영업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3호	영업장 폐쇄명령			

6. 건물위생관리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1)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영업장 폐쇄명령			
아.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제3호	영업장 폐쇄명령			